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7·18세기 虎患 피해 양상과
대응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중 수

2014년 2월

17·18세기 虎患 피해 양상과 대응책

지도교수 김 동 전

김 중 수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김중수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2월

Aspects of Tiger Damage and Countermeasure
in 17th and 18th Century

Kim Jung-Soo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pects of Tiger Damage and Countermeasure in 17th and 18th Century

Tiger disaster in Joseon Dynasty broke out throughout the country except island areas. Tiger disaster that continuously occurred in Joseon Dynasty caused various kinds of social problems and government had expanded tiger capture activities to solve this. However, tiger capture activities at early Joseon dynasty resulted in exploitation against people or suspension of hunting due to complaints against the compensation over the time. Accordingly, tiger capture activities had not been conducted properly and tiger disaster continued while negative awareness on goal of tiger capture policy got stronger.

In particular, tiger disaster after two wars took a new turn along with unstable social phenomenon. As tiger disaster continued despite measure of government, Joseon government carried out tiger capture policy to solve this. However, tiger hunters did not satisfy with compensation of tiger hunting policy and stopped tiger hunting or changed to exploit the people.

Tiger capture policy exposed its limit as the burden was shifted to general public due to instability of tiger capture activity or overuse of tiger capture policy while government tried to execute tiger capture policy by complementing such tiger capture activity.

17th century and 18th century for this thesis were the times when the conflict between dominating class and dominated class of Joseon society got

intensified after two wars, and civilians finally requested more reasonable relations for country. This situation was clear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and the conflict element of social class in dominated class went to extremes as the corruption of ruling class and contradiction of society got intensified. Joseon government carried out tiger capture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ing public welfare of people frequently suffering from tiger disaster.

Up to now, studies on tiger capture policy and tiger disaster were limited on early phase of Joseon in terms of period. Tiger disaster frequently occurred due to conflict between tigers and the public as the people cultivated the area of tiger to farmland due to devastated land. Most studies are related to tiger capture policy and activities performed by central government to stabilize the livelihoods of the public as well as effects of results. In contrast, there has been almost no study on tiger capture policy carried out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iger disaster of late Joseon period.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effects of tiger disaster and tiger capture policy of late Joseon peri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fundamental examination on the aspects of efforts of central government trying to pursue stability of the livelihoods of the public, which was included as a social problem of the late Joseon.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1
2. 연구성과 검토 및 방법	2
II. 호환의 증가와 피해실태	6
1. 호환 증가의 원인	6
2. 시기별·지역별 호환실태	8
III. 호환에 대한 국가 대응책	15
1. 정부의 포호정책 수립	15
2. 민·관의 포호활동과 성과	29
IV. 호환 대응책의 한계	38
V. 결론	45
참고문헌	50
<부록> 17·18세기 호랑이 출현·포획 및 피해 현황	55

표 목 차

<표 1> 17·18세기 호랑이 출현 및 인명·가축피해 현황	8
<표 2> 지역별 호환 피해 분포실태	9
<표 3> 중앙과 지방의 호랑이 포획부대 편성	16
<표 4> 1699년(숙종 25) 삼군문에 속한 각 읍	20
<표 5> 17·18세기의 포호활동 현황	29
<표 6> 도성과 경기지역의 포호활동	30
<표 7> 민간인의 포호활동	34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조선시대의 호환(虎患)은 도서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였다. 조선시대에 끊임없이 발생하였던 호환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국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호(捕虎)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에는 착호갑사(捉虎甲士)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착호군(捉虎軍)을 둬으로써 포호활동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이를 위해 ‘착호절목’을 제정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고자 호피 공납제를 실행하게 되었다.¹⁾ 그러나 조선전기의 포호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단 되거나 오히려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포호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이후 포호활동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호환은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양난 이후의 호환은 불안한 사회현상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호환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호정책을 재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성부와 경기지역은 삼군문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지방에는 군사를 동원하여 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호랑이 사냥꾼들은 포호정책상의 불만으로 호랑이 사냥을 중단하거나 백성을 수탈하는 양상으로 변질되어갔다.

이러한 포호활동의 문제를 보완하여 포호정책을 제대로 시행코자 하였지만 이를 남발하거나 포호활동의 불안정으로 인한 부담을 일반 백성에게 전가함으로써 포호정책은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지금까지 포호정책과 호환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호랑이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서 호랑이와 민간의 충돌은 빈번한 호환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1) 김동진, 「조선전기 농본주의와 포호정책」, 『호남사학』 제41집, 호서사학회, 2005.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포호정책과 포호활동 등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 등을 검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7·18세기의 호환과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포호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흡하다. 그러므로 17·18세기의 호환과 포호정책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당시 조선후기의 사회적 문제에 포함되었던 민생안정의 추구라는 목적을 거두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접근이다.

2. 연구성과 검토 및 방법

1) 연구성과 검토

지금까지 대체로 포호정책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호환에 대한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도 조선전기의 사례만을 다루었고, 조선후기의 호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소홀하였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호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사회경제사 측면에서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착호절목(捉虎節目)’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에 의해서 포호정책에 대한 제도와 현실적 측면의 포호활동 등의 운영 실태와, 호환 양상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윤곽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경우, 시기적으로 조선전기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조선 후기의 포호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김동진²⁾은 조선전기 포호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조선시대에 시행된 포

2) 김동진, 『조선전기 포호정책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조선전기 포호정책 연구 : 농지개간의 관점에서』, 선인, 2009.

_____, 앞의 책, 2005.

_____, 『조선전기 강무의 시행과 포호정책』, 『조선시대사학보』 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김동진·이항, 『조선시기 한국인과 한국법의 관계 변화』, 『역사와 담론』 제50집, 호서사학회, 2011.

_____, 『19세기 한국 법을 바라보는 세 시각 : 한국 법, 조선인, 서구인의 눈으로 그린 모습』, 『역사와 문화』 23호, 문화사학회, 2012.

호정책이 농본주의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조선전기의 호랑이와 표범(이하 호·표)의 출현과 포획, 호환의 인명·가축피해에 대해 파악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착호군(捉虎軍)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도, 포호정책의 성과를 확인하는 포호포상제와 성과관리제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³⁾ 그리고 포호절목과 호피와 관련한 공납(貢納)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포호절목과 포호포상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⁴⁾ 또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호피와 관련한 산지와 토공 및 토산에 대한 전국분포도를 파악하였다. 이와 연관되어 농경지개간과 호환의 양상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중앙정부의 포호정책이 민생안정 해결을 목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포호정책이 조선전기에 진행된 사회·경제 변동과 밀접히 관련되었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시기적인 제한이 있으며 연구 주제 또한 토지정책 위주의 사회경제사 중심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검토는 미진한 편이다.

이광희⁵⁾는 조선전기의 호환과 국가의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호환 발생이 백성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는 포호정책의 시행이 백성들을 일상생활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서 15세기를 중심으로 호환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지배층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피해자와 정려(旌閭)자의 지역별 분포도를 조사하여 파악함으로써 국가가 민간에 베푼 호혜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정연식⁶⁾은 조선시대 호환의 양상과 호랑이의 위협에 대비한 포호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조선기행-백여년 전에 조선을 둘러본 두 외국인의 여행기』⁷⁾와 『상투의 나라』⁸⁾·『내가 본 조

3) 김동진, 위의 책, 2009, 83~202쪽.

4) 김동진, 앞의 책, 2009, 139~168쪽.

5) 이광희, 「조선전기 호환과 국가시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정연식, 「조선시대의 호랑이와 호환」,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12, 2004.

7) 샤를 루이 바라·샤이에 룡 저 / 성귀수 옮김 『조선기행-백여년 전에 조선을 둘러본 두 외국인의 여행기』, 눈빛, 2003.

선, 조선인』⁹⁾을 통해서 조선시대 호환 양상을 제시하고 포호활동과 이로 인한 수탈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아 얻게 되는 호랑이의 부산물을 공납에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호랑이』와 『호질(虎叱)』을 통해서 강원도 지역의 독특한 무덤인 호식총(虎食塚)¹⁰⁾과 범긋을 사례로 하는 민간신앙의 전승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호환의 양상과 대응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다루어서 다소 간략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상의 연구가 사회경제적 시각의 호환 연구라 한다면 조계영¹¹⁾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통해서 반포된 ‘착호절목(捉虎節目)’을 분석하여 사냥방법, 포상체계 등에 대한 주요 개정 조목과 적극적으로 백성의 포호활동을 장려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문제에 주목하였다. 그는 ‘착호절목’이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전국에 반포하여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목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착호절목’은, 또한 심각했던 호환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행세칙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16세기 이후 강무가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와 임진왜란에 연유하는 소홀한 포호활동 때문에 호환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착호절목’의 포상에 대해서 본래의 뜻과 달리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심승구¹²⁾는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선왕조가 추진한 사냥의 정책사적 추이와 특성, 조선 건국 이후 대내외적인 사회적 생태적 변화에 따라 각 시기별 사냥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목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사냥문화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초점을 두었다. 조선왕조에서 실시한 강무제(講武制)의 추이와 특성,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여 사냥정책의 기능이 국왕중심의 집권체제를 안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8) LH 언더우드 저 / 신복룡 역, 『상투의 나라』, 집문당, 1999.

9) 카르네프 저, 『내가 본 조선, 조선인』, 가야넷, 2003.

10) 태백지역에는 호식총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돌무덤으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에게 물려간 화전민의 수가 적지 않았다. 호식총은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한 후 무덤을 만들었는데 무덤에 시루를 뒤집어엮어두고 시루 구멍에 부엌칼을 꽂아뒀 원귀가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정연식, 앞의 책, 2004., 135쪽).

11) 조계영, 「조선시대 호환과 국가의 대책」,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제91호, 2008.

12)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제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 연구방법

본고는 17·18세기를 중심으로 호환의 양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조선후기 호환의 증가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 시기별·지역별 호환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포호활동과 포호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 유의하면서, 호환이 다시 발생하게 된 원인과 시기별·지역별 호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대응책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호환이 일어나는 지역, 장소, 인명·재산피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고찰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나아가 국가의 호환대응책이 갖는 한계도 파악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17·18세기의 호환의 증가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하되, 각종 사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17·18세기에 호환이 다시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각 시기별·지방별 피해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호환의 피해와 관련하여 호환에 대한 국가 대응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포호활동을 담당한 삼군문(三軍門)과 포호방법의 개선 및 '착호절목(捉虎節目)'을 분석하여 시기별·지역별 포호정책을 살펴보고, 포호활동을 실행한 삼군문의 군사들과 민간인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호환대응책을 바탕으로 포호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포호정책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후기에 발생한 호환과 포호정책의 전개가 어떻게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호환의 증가와 피해실태

1. 호환 증가의 원인

조선시대의 호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였다.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호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6세기 말부터 강무제와 포호활동은 오히려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중단되기도 하였다.¹³⁾ 이것은 포호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포호정책의 본 목적이 희석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포호활동의 철회로 호랑이 사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호랑이 수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은 이후 호환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⁴⁾

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각도(各道)의 호환(虎患)은 실로 백성들의 해가 됩니다. 신이 듣건대, 호인(胡人)이 늘 사냥을 일삼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우리나라의 경계를 피해서 온다 하니, 만약 서북 지방의 변장(邊將)과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병(軍兵)을 통솔하여 때때로 사냥하게 한다면, 포(砲)를 쏘는 것도 익힐 수 있고 호환(虎患)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였다.¹⁵⁾

② 호조판서(戶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그런데 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신(大臣)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조총을 쏘는 것은 거짓으로 명중시키는 경우가 많고, 과거를 볼 수 있는 길은 매우 많다는 이유로 어렵게 여겼습니다. 신이 요즈음 보건대, 병조(兵曹)에서 호랑이를 잡은 데 대한 포상에서 허위(虛僞) 때문에 이를 변통하여 혁파(革罷)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변방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변방의 백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으므로 호랑이를 잡은 자는 스스로 가자(加資)되

13) 『신조실록』 권5, 선조 4년 11월 경오조. “前者 以東西道捉虎大將 不能禁戢軍士 致令掠擾民間 上命罷其役”.

14) 심승구, 앞의 책, 2007, 187~192쪽.

15) 『숙종실록』 권37, 숙종 28년 11월 정묘조. “兵曹判書李濡曰 各道虎患 實爲生民之害 臣聞 胡人長事田獵 故猛獸避來我境云 若令西北邊將守令 領率軍兵 時時打圍 則砲射可習 虎患可除”.

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호피(虎皮)를 사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값을 받아 연명(延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피가 쓸 데가 없는데, 누가 기꺼이 비싼 값으로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호랑이 사냥을 위해 총 쏘기를 익힌 자들이 모두 총을 팔아서 먹고 있으므로 총을 쏘는 기술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소홀해지고 있으며, 호환(虎患)도 이로 말미암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¹⁶⁾

③ 이때에 사나운 호랑이가 횡행(橫行)하여 사람과 가축을 상해하였으므로 팔도(八道)의 장계가 거의 없는 날이 없었으니,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의 총계가 1백 40인이었다.¹⁷⁾

사료 ①은 1702년(숙종 28) 국내의 호환 발생은 청나라 사람들이 전렵을 일삼아 국외의 호랑이 유입으로 발생하는 호랑이의 증가를 말한다. 사료 ②는 1724년(영조 즉위) 변방의 백성들이 호랑이를 잡아 공과로 벼슬길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던 호피를 사고자 하는 이가 없게 되자 호랑이 사냥을 위해 총포술을 익힌 자들이 모두 총을 팔아서 먹게 되면서 총을 쏘는 기술이 더욱 소홀해지고 있었음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는 방도와 인력이 감소하게 되어 호환이 발생해도 막을 방도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료 ③은 1734년(영조 10) 전국에 나타난 호환에 대한 장계가 끊임없고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가 총 1백 40인이 되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앞의 사료 ①, ②가 지적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료 ①, ②, ③을 통해서 호환 증가의 원인과 실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만주인의 사냥은 호랑이의 수가 증가 하였다는 확인되었다. 호랑이가 증가하면 그 만큼 먹이도 부족하기에 백성과 가축에 대한 습격은 민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는 자들과 변방의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

16)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 10월 을유조. “戶曹判書吳命恒白上曰 而臣以此往復於大臣 則以砲多僞中 科路太廣 難之矣 臣近見兵曹 以捉虎賞加之詐僞 變通革罷 臣詳察邊情 則邊民無資生之道 捉虎者 不願自己加資 賣虎皮於願買之人 受價連命 而今則虎皮無用 誰肯重價買之 前之爲獵虎而習放者 舉皆賣銃以食 砲藝由此益疎 虎患由此益熾”.

17)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9월 임인조. “時 惡虎縱橫 嚙害人物 八路狀聞, 殆無虛日 自夏至秋 摠計死者爲一百四十人”.

하기 어려워지면서 호랑이를 잡는데 대한 포상을 거부하고 조총을 보유한 사냥꾼들이 총을 팔아 생활함에 따라 호환의 증가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호환의 증가원인은 사회적·경제적 영향으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즉, 국외의 호랑이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호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호랑이를 잡는데 대한 포상의 문제는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냥꾼들과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결국 당시 호환 증가 원인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시기별·지역별 호환실태

조선시대의 호환은 증감을 반복하였다. 17세기부터 호환이 점차 증가하고 18세기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¹⁸⁾ 17·18세기 호랑이 출현 및 인명과 가축피해의 현황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7·18세기 호랑이 출현 및 인명·가축피해 현황

시기	호랑이 출현 수	인명피해 수	가축피해 수
17세기	41마리 이상	369명 이상	38마리 이상
18세기	155마리 이상	360명 이상	75마리 이상
소계	196마리 이상	729명 이상	113마리 이상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본고 <부록> 17·18세기 호랑이 출현·포획 및 인명과 가축피해의 현황 자료 참조. 명확히 수가 확인 되지 않는 다수의 피해는 최소 2인·2마리 이상으로 적용하여 산출함)

<표 1>은 호환에 의한 피해 기록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확실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다수의 피해인 경우 최소 2인·2마리 이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호환사례는 시기별·지역별로 인명피해와 가축피해의 실태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

17·18세기 호랑이 출현 및 인명·가축피해의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

18) 본고 <부록> 17·18세기 호랑이 출현·포획 및 인명과 가축피해의 현황 자료 참조.

시 되어야 하는 것이 호랑이 출현수와 피해수의 파악이다. 이러한 호환 실태의 수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전기 포호정책 연구 : 농지개간의 관점에서』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호랑이 출현 및 인명·가축피해 현황을 분류하고 있다.¹⁹⁾ 그런데 본고와 조사과정의 차이에 의하여 영조 48년(1772)부터 호환이 감소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최소 2인·2마리로 적용하면 정조 시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선행연구의 호환 피해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 이유로는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든 대규모 피해를 기록한 각 사료의 피해 사례의 차이에 따른 조사과정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시기별로 보면 17세기는 호랑이 출현 수가 41마리 이상이고, 인명피해는 369명 이상, 가축피해는 38마리 이상으로 확인된다. 이에 반해 18세기는 호랑이 출현 수가 155마리 이상이며, 인명피해는 360명 이상, 가축피해는 75마리 이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18세기에는 17세기에 비해서 호랑이의 출현수가 증가하지만 인명피해와 가축피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포호활동이 증가하면서 백성들도 전에 비해 대응하는데 익숙하게 되어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환피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호환 피해 분포실태

지역 시기	한성부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17세기	11건 이상	6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8건 이상	-	35건 이상	2건	-
18세기	65건 이상	163건 이상	221건 이상	8건 이상	2건 이상	18건 이상	32건 이상	10건 이상	4건 이상
합계	76건 이상	169건 이상	224건 이상	10건 이상	30건 이상	18건 이상	67건 이상	12건 이상	4건 이상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본고 <부록> 17·18세기 호랑이 출현·포획 및 인명과 가축피해의 현황 자료 참조. 명확히 수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최소 2건을 적용하여 이상로 산출함)

<표 2>를 보면 호환의 지방별 피해를 파악할 수 있다. 한성부의 경우 76건 이

19) 김동진, 앞의 책, 2009, 319쪽.

상, 경기도 169건 이상, 강원도 224건 이상, 경상도 10건 이상, 전라도 30건 이상, 충청도 18건 이상, 평안도 67건 이상, 함경도 12건 이상, 황해도 4건 이상, 전국 797건 이상의 호환 피해가 발생하였다.

호환 피해는 경기도, 강원도, 한성부, 평안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호환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한성부지역과 민가지역, 산간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산간 지역이나 경작된 개간지 등이 호랑이의 서식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²⁰⁾

인명피해와 가축피해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를 중심으로 심각하였으며, 가축피해의 경우 주로 목장에서 키우는 말이나 민가에서 기르는 개, 소, 돼지 등이 주된 피해 대상이었다.²¹⁾ 목장에서 기르는 말은 방목해서 기르다 보니 호랑이에게 쉽게 노출되어 주된 먹잇감이 되었다.²²⁾

이러한 호환이 너무 잦아보니 재이(災異)로 칭하여 전쟁이나 기근에 비할 정도였다.²³⁾ 호환에 의한 인명피해와 가축피해에 대해서 다음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④ 평안감사의 서목에는 의주(義州)의 호환(虎患)이 날로 심해져 30여 명이 피살되었다는 일이었다.²⁴⁾

⑤ 호남 순천부(順天府)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 25필을 호랑이가 몰아서 죽였다.²⁵⁾

⑥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한성부에서 보고하면서 남부(南部)의 임장(任掌)들의 수본(手本)을 일일이 열거하여 한강(漢江)에서부터 두모포(豆毛浦)까지 호랑이의 발자국이 남자하게 찍혀 있고 인가의 개와 돼지들도 도처에서 먹어치워 새벽이나 저녁무렵

20) 김동진 앞의 책, 2009, 60~68쪽.

21) 『비변사등록』 권11, 영조 23년 1월 정묘조. “司啓辭 卽見京兆報狀 則枚舉東部都事任守寬所報 以爲 部屬東大門外 一大虎 一籬虎 數日往來崇信坊 契居砲手姜泰周等四人家 猪九口 連續嚙去云 都城咫尺之地 有此虎患 極爲驚駭”.

22) 『선조실록』 권207, 선조 40년 1월 갑신조. “司僕寺提調啓曰 亂後各牧場 元放馬數少 孳息不敷 勢所然也 加以惡虎踰入 沒數攬殺 至有空場之處 極爲寒心”.

23)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 12월 을해조. “虎嚙之數 多至三百餘人 亦一變異也”.

24) 『승정원일기』 인조 9년 9월 기묘조. “平安監司書目 義州虎患日甚 被殺三十餘名事”.

25) 『현종실록』 권26, 현종 13년 7월 정묘조. “湖南順天府牧場馬二十五匹 爲虎所咬殺”.

에 사람들은 길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호랑이가 왕래한 발자국을 살펴보면 외남산(外南山) 서쪽 정아현(貞兒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성밖 지척의 땅에서 이와 같은 호환(虎患)이 있어 사람들이 길을 다니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²⁶⁾

⑦ 어사 홍경해(洪景海)가 아뢰기를, “경기 고을에는 근래 호환(虎患)이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여 인명이 물려 상하는 일이 이루 헤일 수 없습니다. 양주(楊州)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금년 내에 홀전(恤典)을 거행한 경우가 거의 1백 명에 이르고 있으니 사실 가없고 비참한 일입니다.²⁷⁾

⑧ 내가 이르기를, “요사이 호환(虎患)이 없는 곳이 없고, 심지어는 청석동(靑石洞) 근처에까지 호환이 많다고 한다. 청석동은 서관(西關)의 대로(大路)이므로 백성들에게 이만저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참으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잡아서 바친 것을 보면 호랑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였다.²⁸⁾

사료 ⑥은 1631년(인조 9) 평안감사의 서목(書目)으로 의주(義州)의 호환이 날로 심해져 30여 명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호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⑦은 1672년(현종 13년) 호남 순천부(順天府)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 25필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으로 전마(戰馬)를 생산하기 위해 세운 목장에서 발생한 호환은 전마 생산에 차질이 생겼음을 말한다. 사료 ⑧은 1740년(영조 16) 도성 밖 근처에 호환이 발생하였는데, 한강에서 두모포까지 호랑이가 출몰할 정도로 도심피해를 말하면서 아울러 민가의 가축들도 도처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에 사람들이 길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성 밖 인근에서 호랑이의 잦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26) 『비변사등록』 권10, 영조, 16년 6월 경신조. “司啓辭 卽接漢城府所報 枚舉南部任掌手本 以爲自漢江至豆毛浦 虎迹狼藉 人家犬猪 到處喰食 晨昏之際 人不通行 而周審往來之迹 則在於外南山兩負兒峴近處云 城外咫尺之地 有此虎患 至於行路不通之境 事極驚駭”.

27) 『비변사등록』 권12, 영조 33년 11월 정축조. “御史洪景海所啓 畿邑之近來虎患 到處皆然 人命噴傷不可勝數 雖以楊州一邑言之 今年內恤典舉行者 殆至百數 實爲矜慘”.

28) 『일성록』 정조, 7년 2월 임신조. “予曰 近來虎患無處無之 至於靑石洞近處多有此患云 靑石洞爲西關大路其爲民害甚是不少誠非細慮 矣命善曰 以提納觀之可知熾盛矣”.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⑨는 1757년(영조 33) 어사 홍경해가 경기지방의 호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자 양주 한 고을에서 그 해에 내에 홀전을 거행한 경우가 거의 1백 명에 이르는 내용으로 호환 해결책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홀전을 지급이 잦았음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사료 ⑩은 1783년(정조 7) 청석동 근처에도 호랑이가 출현했을 정도로 호환이 많고, 호랑이를 잡아서 바친 것으로 보아도 호환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료를 살펴보면 호환의 지역별, 인명피해, 가축피해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호환의 지역별 피해 양상은 도성 및 민가 거주지 그리고 목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강의 포구까지 호랑이가 출몰하였고 민가의 가축들도 도처에서 피해를 당하게 되어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호환으로 인한 대부분의 인명피해와 가축 피해는 백성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많고 왕래가 잦은 곳이나, 산간 지역 등 호랑이가 서식지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지역에서 호환이 잦았다. 이렇게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호환은 백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생업에도 지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간된 경작지역으로 서식지가 감소하자 호랑이와 백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²⁹⁾ 이러한 호랑이의 서식지 파괴로 생긴 인위적인 환경은 경작된 개간지에서 호랑이와 백성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호환의 발생은 명약관화하였다.

전마(戰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방목하여 군사용으로 쓰기 위해 관리하였다. 목장에서 기르다보니 쉽게 노출되어 호랑이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더욱이 목장에서 기르는 전마의 수가 호환으로 인하여 감소하자 관료들은 삼군문을 통해 호랑이를 사냥할 것을 청하였다.³⁰⁾ 뿐만 아니라 민가에서 기르는 돼지나 개도 호랑이에게 표적이 되어 목장을 비롯한 인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였다.³¹⁾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회문제화 되는 호환에 대한 민생대책을 시행하여

29) 김동진, 앞의 책. 53~82쪽.

30) 『영조실록』 권106, 영조 41년 10월 경신조. “上行晝講 仍引見大臣備堂 領議政洪鳳漢曰 訓練大將具善復 看審江都牧場及文殊山城 及其歸奏 語多勸懇 至請通津邑之移處山城 江華府兼爲水陸大將 吉祥牧場之築樞儲水場內虎患之發 軍行獵四條件 俱係更張 有難輕議 最是牧場虎患 馬種將絕者可悶 令軍門獵捉好矣 [...]”.

31) 『비변사등록』 권11, 영조 23년 1월 정묘조. “司啓辭 卽見京兆報狀 則枚舉東部都事任守寬所報 以爲 部屬東大門外 一大虎 一雜虎 數日往來崇信坊 契居砲手姜泰周等四人家 猪九口 連續嚙去云 都城咫尺之地 有此虎患 極爲驚駭”.

민생안정의 추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⑨ 인왕산(仁王山) 곡성(曲城) 밖에서 호랑이가 나무꾼을 잡아먹고 이어 인경궁(仁慶宮) 후원으로 넘어 들어왔는데 원유사제조(苑圍司提調)와 도감대장(都監大將), 총융대장(摠戎大將)이 두 영(營)의 군병을 거느리고 뒤쫓아 잡았다.³²⁾

⑩ 경상도(慶尙道) 합천(陝川)의 수군(水軍) 문순천(文順天)의 형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문순천이 죽음을 무릅쓰고 추격하여 사나운 호랑이를 쳐 죽여 그 형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군역(軍役)을 면제하라고 명하였다.³³⁾

⑪ [...] 경주(慶州) 군관(軍官) 박남구(朴南耆)는 호랑이가 그 어미를 물어뜯자, 호랑이와 더불어 서로 격투하여 호랑이가 곧 어미를 내버리고 가버렸으므로 어미가 죽음을 모면하였는데, 도신(道臣)이 이것을 계문(啓聞)하니, 정문(旌門)을 세워 포장하게 하였다.³⁴⁾

⑫ 경기의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홀전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³⁵⁾

사료 ⑨는 1626년(인조 4) 인왕산 곡성 밖에 호랑이가 나무꾼을 잡아먹고 인경궁 후원에 들오자 원유사제조(苑圍司提調)와 도감대장(都監大將), 총융대장(摠戎大將)이 군사를 이끌고 잡았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도성에서 호환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호활동을 명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료 ⑩은 1698년(숙종 24) 경상도 합천(陝川)의 수군(水軍) 문순천(文順天)의 형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문순천이 죽음을 무릅쓰고 호랑이를 추적하고 죽여 그의 형을 살리자 군역을 면제 받았다는 내용이다. 본래 군역은 양인(良人)

32)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12월 을묘조. “仁王山曲城外 有虎攫食樵者 仍踰入仁慶宮後苑 苑圍司提調及都監大將 摠戎大將 率兩營軍兵 尋蹤捕捉”.

33) 『숙종실록』 권38, 숙종 24년 3월 정묘조. “慶尙道陝川水軍文順天兄 爲虎所攫 順天冒死追突 搏殺猛虎 其兄得不死 命免其軍役”.

34) 『영조실록』 권40, 영조 11년, 1월 기축조. “[...] 慶州軍官朴南耆虎攫其母 與虎相搏 虎乃捨之而去 母得不死 道臣啓聞 旌褒”.

35)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11월 신묘조. “京畿攫死人等 令施恤典”.

신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의무였기 때문에 양역(良役)이라고 지칭되었다. 따라서 양반과 공신, 그리고 노비나 천민 계급만 균역이 면제되었다.³⁶⁾ 그런데 호환이 발생하자 피해자에 대한 대책으로 균역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이라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호환이 문제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료 ⑪은 1735년(영조 11) 경주 군관(軍官) 박남구(朴南耆)는 호랑이에 물린 그의 어머니를 되살려낸 것에 대한 표창으로 정문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호환에 대한 정려 사례가 확인되는 것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조선사회의 민심을 달래고 고질적으로 발생하였던 호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사료 ⑫는 1748년(영조 24) 경기도에 호환으로 죽은 백성들에게 홀전을 시행하라고 명하는 내용이다. 호환에 대한 구휼정책은 유독 영조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호환 증가와 관련있다.³⁷⁾ 즉, 호환이 발생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홀전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화 된 호환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⁸⁾

마지막으로 사료 ⑧에서 볼 수 있듯이 호환이 증가하자 이에 따른 포호활동을 실행하면서 포획한 호랑이의 수를 토대로 포호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호환은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회적·정책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호환은 조선후기에 사회문제화 되어 중앙정부에서 포호정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호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가축피해가 나타나자 중앙정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포호정책을 하기에 이르렀다.

36) 정자영, 「조선 후기 균역제의 변화, 조선 후기 균역제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1 쪽.

37) 『승정원일기』 영조, 1년 5월 갑인조. “慶尙左兵使 以慶山等官居良女命德等三名 爲虎嚙殺事狀啓 傳于洪龍祚曰 嚙死人等 令本道恤典舉行”; 『영조실록』 권57, 영조 19년 1월 계미조. “平安道江界民二十餘人 爲虎嚙死 命施恤典”; 『영조실록』 권69, 영조 24년 12월 을사조. “忠淸道嚙死人等 命施恤典”; 『영조실록』 권75, 영조 28년 2월 계묘조. “咸鏡道嚙死人等 令施恤典”; 『영조실록』 77권, 영조 28년 7월 을해조. “黃海道嚙死人等 令施恤典”; 『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12월 갑인조. “京畿嚙死人等 令施恤典”; 『영조실록』 권82, 영조 30년 9월 을유조. “江原道淮陽等地 被虎嚙死者 爲百餘人 並施恤典”.

38) 조선전기 역시 조선사회의 민심을 달래고 고질적으로 발생한 호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대책을 실행하였다. (이광휘, 앞의 책, 2001. 34~43쪽).

Ⅲ. 호환에 대한 국가 대응책

1. 정부의 포호정책 수립

포호정책 역시 임진왜란 전후로 변화하여 조선 전기에는 중앙에 착호갑사(捉虎甲士)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방에는 착호군(捉虎軍)을 둠으로써 포호정책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이를 위해 ‘착호절목’을 제정하고 그 성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호피 공납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³⁹⁾ 중앙에서는 착호갑사가 중심이 되어 포호활동을 주도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관찰사·수령·절제사·절도사 등 지방관의 책임 아래 호랑이를 포획하는 것이다. 또한 포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착호절목’⁴⁰⁾을 반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포호활동에 임할 수 있게 장려하였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군제가 변화됨에 따라 삼군문(三軍門)에서 중앙의 포호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⁴¹⁾ 조선 전기에는 호랑이를 잡을 때 활, 화살, 창, 함정 등을 이용해서 잡았던 것을⁴²⁾ 후기에는 포수를 동원하여 사냥하는 방식 위주로 바뀌었다.⁴³⁾

조선후기에는 중앙군제와 지방군제에서 포호활동을 실행하였는데 중앙군제에서는 삼군문(三軍門)에 속한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에서 포수와 장관을 동원하여 실행하였고, 지방군제에서는 군사를 동원하여 잡게 하였다. 포호활동은 대부분 포수와 장관을 동원해서 화승총으로 호랑이를 잡는 것인데 대개 호랑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약 30~60여 명 정도의 군사를

39) 김동진, 앞의 책, 2009, 193쪽.

40) 착호절목과 관련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성종실록』 권9, 성종 2년 1월 을유조. ; 『성종실록』 권199, 성종 17년 12월 계유조. ;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9년 1월 을해조.

41) 『숙종실록』 권37, 숙종 28년 12월 기축조. “有虎恣行於弘濟院近處 咬傷樵童 命三軍門捕之”.

42)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2월 무인조. “兵曹啓 前此各道人 願屬捉虎甲士者 本曹不問才否 許令入屬 實爲未便 自今本道兵馬都節制使 當虎豹興行時 令自願人捕捉 依曾降教旨 分其槍箭 先後口數多少 報于本曹 本曹隨即馳報 以所獲多者 隨闕填差 從之”.

43) 『숙종실록』 권37, 숙종 28년 12월 갑오조. “行司直李寅燁請對 陳賑廳罄竭 難於責應 請三軍門月課火藥價 自本廳防納 戶曹稅太 限二萬石取來 分給各道 以爲種子 上可之 又請北路給銃 時 以虎患防守爲名 而只給私銃 公銃則勿許出給 上亦許之 寅燁又以收拾人才 申飭海防爲言 未復以奮發聖志 爲今日急務 上嘉納之”.

동원하였다. 그런데 호랑이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워 잡는 도중 피해도 발생하고 호랑이를 잡아 받게 되는 포상이나 호속목(虎贖木)⁴⁴⁾으로 인한 폐단이 생겨 이에 대한 절목을 제정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포수양성은 포호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후 삼군문 체제의 확립과 함께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서 도성지역과 경기 지역을 3구역으로 나누어 포호 활동을 시행하였다.⁴⁵⁾ 또한 지방의 포호활동은 병사(兵使)가 담당하여 영장(營將)이 병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이 관할하는 수령에게 포호활동을 지시하면서 참여하였다. 호환이 극심할수록 지방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는 영장의 포호활동이 더욱 중요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군의 운영은 포호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의 치안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되었던 것이다.⁴⁶⁾

전국에서 발생했던 빈번한 호환은 백성들은 물론 관료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호환은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착호절목’을 반포하고 군사와 백성에 포호 활동을 독려하고 장려하였다.⁴⁷⁾ 또한 이들이 잡아서 바치는 호피를 통해 포호성과를 확인한 것이다.⁴⁸⁾ 절목에는 포호활동의 과정, 보상, 등에 대해서 기록되었다.⁴⁹⁾ 1699년(숙종 25)에 반포된 ‘착호절목’을 통해서 호환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중앙과 지방의 호랑이 포획부대 편성

44) 조선 시대 호랑이를 잡아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면포. 담당 관청은 선혜청(宣惠廳)임. 해마다 호랑이를 사냥하여 백성의 해를 덜어 줄 목적으로 규례에 따라 징수하였다. 법전에 규정된 국가의 공식적인 세목은 아님. 면포 대신에 쌀 또는 비단으로 납부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잡은 호랑이 가죽은 진상하여 방물(方物)로 사용함. 지역을 막론하고 징수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되었으며, 호피를 충당하기 위해 면포만 거두어 각종 폐단을 야기하게 되었다.. ; 『인조실록』 권8, 인조 3년 3월 정묘조. “諫院啓曰 仁政以恤民爲本而恤民非他 去其爲民弊者而已 姑以虎豹皮之弊言之 應納之數 歲不過數十領 而各道派定 遍於三百邑 其數當幾何 當初設貢之意 本欲設機擯攘虎豹 以除民害 而其流之弊 未免於斂布而質之”.

45) 김중수,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 해안, 2003. 258쪽.

46)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해안, 1999. 185~186쪽.

47) 조계영, 앞의 책, 2008, 199~200쪽.

48) 김동진, 앞의 책 194~195쪽. ;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6월 신유조. “戶曹啓曰 聞 淸國帛祭之使 不久當至 諸王亦各有所送云 [...] 且虎 豹皮 鹿皮 水獺皮 紙地席子 刀劍 則依前分定於外方 使之措備 及期上送爲當 上從之”.

49) 「조선시대 호환과 국가의 대책」에서는 조선전기와 후기에 반포된 ‘착호절목’에 대해 각 조목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중앙과 지방의 포획부대의 구성과 체제를 통하여 조선후기에 반포한 ‘착호절목’을 설명하고 있음을 밝힌다.

	중앙	지방
책임자	삼군문, 장관	병사
지시범위	착호장	수령, 영장, 착호장
구성원	포수, 장관	포수, 살수, 사수, 심종장
	포수, 장관의 인원수를 정하여 차출함	포수 7초(哨), 살수 4초(哨), 사수 2초(哨)
도구	조총, 그물, 환도	조총, 궁노, 그물, 환도
포상	삼승포(三升布), 목(木), 베(布), 저(苧)	면포(綿布), 가자(加資)

(자료: 『비변사등록』 ‘착호절목’ 참조.)

<표 3>은 ‘착호절목’에 나와 있는 중앙과 지방의 호량이 포획부대 편성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중앙의 책임자는 삼군문과 장관으로 이루어졌고 지시자는 착호장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은 포수와 장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원선발은 포호활동을 할 때마다 인원수를 정해 차출하고 호량이 사냥을 나서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도구는 주로 조총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포상은 삼승포(三升布), 목(木), 베(布), 저(苧)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 책임자는 병사가 담당하고 지시자는 수령과 영장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은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어 포수 7초(哨), 살수 4초(哨), 사수 2초(哨)로 구성되고 있다. 포상은 면포(綿布), 가자(加資)를 받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699년(숙종 25)에 반포된 ‘착호절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조목은 다음과 같다.

⑬ 삼군문(三軍門)에서는 잘 쏘는 포수로서 인원수를 정해 뽑고, 장관들 중 용맹하고 건장한 사람을 가려 둔다. 또한 경기의 각 고을을 각 군문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범피해의 정상을 각 고을로 하여금 일일이 보고케 한다. 그러면 해당 군문에서는 즉시 이들을 내보내서 잡아야 함.⁵⁰⁾

⑭ 관서의 강변 사람들이 범을 가장 잘 잡는데 지난 겨울 이정방(李廷芳) 등이 잡은 바가 매우 많았다. 전례대로 강변 여러 고을의 장관(將官)과 무사들 중에서 2~3명을 가려 말을 주어 올려 보내고, 또 군병과 토민(土民) 중에서 평소 범을 잘 잡는 자 20명을 뽑아 함께 올려 보내서, 서울에서 늬료를 주고 영솔하여 범을 잡도록 할 것.⁵¹⁾

50)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三軍門善放砲手 定其名數抄出 將官中勇健人擇定爲白遣 畿內各邑 分屬各軍門爲白有如有可 虎患形止 使各邑 這這馳報該軍門 劃卽出送捕捉爲白齊”.

⑮ 여러 도의 각 고을에서는 군병과 산척(山尺) 및 포수 중에서 영솔할 만한 무사를 가려 임명하여 대령시켰다가 각 마을에서 범의 종적을 찾아 고하면 그 시간 내에 즉시 출발시켜 잡도록 해야 한다. 또 먼저 포를 쏘아 잡은 사람의 성명을 즉시 본사에 보고하여 논상하도록 해야 한다. 무사와 군병들의 식량을 원회부(元會付)의 미곡으로 계산해서 감할 것이며, 화약과 탄환은 군기 회부(軍器會付) 중에서 계산해 감할 것임.⁵²⁾

⑯ 각 고을에서는 무사 중에서 이런 일에 능숙한 자들을 모집하고 성명을 적은 문서를 본사에 올려 보내서 이를 빙고하여 논상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들에게 일을 전담시키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거행해서 기어코 많이 잡도록 할 것.⁵³⁾

⑰ 범을 잡는 일은 병사가 전담하여 각 영을 지휘해야 하며 각 영장들은 각 고을을 신칙시켜 거행해야 한다. 만약 능장부리고 착실치 못한 근심이 있으면 영장과 수령을 각별히 논책(論責)할 것임.⁵⁴⁾

⑱ 금위영에서 전 부사 정시응(鄭時凝)을 시켜 범 잡는 기계를 만들게 하였는데 매우 편리하고 마련하기도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우선 정시응을 먼저 양주(楊州) 등지에 내려 보내서 힘닿는 대로 만들어 설치케 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으면 여러 고을에 분부하여 이대로 만들고 많이 설치해서 범 잡는 길을 넓힐 것임.⁵⁵⁾

⑲ 함정과 궁노(弓弩) 및 기계를 각별히 신칙시켜 수리해서 범 잡는 길을 널리 열어야 한다. 또한 감고(監考) 등에게는 잡는 데에 따라 각별히 시상해서 격려시키도록

51)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關西江邊人 最善於捉虎 前冬李廷芳等 所捉甚多是白去乎 依前例 江邊諸邑將官武士中 擇取二三人 給馬上送爲白遣 軍兵士民中 常時善於捉虎者 二十名抄擇 一時上送 以爲自京給料 率領捕捉之地爲白齊”.

52)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諸道各邑軍兵及山尺砲手中 抄擇領率武士 差定待令爲白有如有可各村尋蹤馳告是白去等 當刻內卽爲發送捕捉爲白乎矣 先放人姓名 劃卽馳報本司 以爲論賞之地爲白乎跡 武士軍兵等糧食 以元會米計減 藥丸 以軍器會付中計減爲白齊”.

53)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各邑武士中 招募有能於此事者 姓名成冊 上送本司 以爲憑考論賞之地爲白遣 使之專管此事 從其設施舉行 期於廣捕爲白齊”.

54)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捉虎之事 兵使專掌指揮各營爲白乎跡 營將段 申飭各邑舉行爲白乎矣 如有稽緩 不爲着實之患 則營將·守令 各別論責爲白齊”.

55)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禁衛營 使前府使鄭時凝 造置捉虎機械 甚爲便利 措備不難是白去乎 鄭時凝姑先下送於楊州等邑 爲先隨力造成設置 果有成效是白去等 分付列邑 依此造成多設 以廣捕捉之路爲白齊”.

할 것.⁵⁶⁾

②0 영장이 있는 고을이나 관아가 멀지 않는 곳에 범의 피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영장과 수령이 민정(民丁)과 무사를 출발시켜 즉시 포위해 잡아야 한다. 또 먼저 쏘아 잡은 사람의 성명을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여 논상하도록 해야 함.⁵⁷⁾

②1 각 고을에서는 각기 마을로 하여금 새끼줄 그물을 많이 준비하게 하였다가, 범이 산골짜기에 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민인들은 각자 그물을 가지고 모이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길을 막고 포위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관아에 달려가 고해 군병을 출발시켜 포위해 잡도록 해야 함.⁵⁸⁾

②2 계해년(1683)의 사목 내에 '인명을 많이 살해한 악독한 범을 잡은 출신에게는 변장을 제수하고, 유품(儒品)과 한량·군병 및 공사친 등에게는 면포 20필씩을 준다. 또 두 마리 이상을 잡은 출신과 유품에게는 자급(資級)을 더해 주고, 한량·군병·공사친 등에게는 면포 20필씩을 더 준다. 그리고 금군(禁軍)에 소속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그 청을 들어 주고 그 범의 가죽도 함께 준다. 범을 잡은 자들에게 주는 면포는 각기 도에 있는 호조의 회부목(會付木)으로 내어 줄 것이며, 무명이 없으면 미곡으로 값을 계산해 준다. 사람을 해친 악독한 범이 아닌 것으로서 큰 범을 잡은 자는 면포 10필을 주고 작은 범이면 점차 수량을 감하여 준다. 원래 악독한 범이 아닌 것을 헛말로 속여 보고하면 해당 관리 모두를 각별히 치죄하였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시행할 것임.⁵⁹⁾

②3 여러 도에 범의 피해가 아직까지 그치지 않으니 별도의 절목을 만들어 잡지 않을 수 없다. 각자 개인적으로 잡은 자들에 대한 상전(賞典)은 형체의 대소와 사람을 해친 다소에 따라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여, 제때에 시상하도록 할 것.⁶⁰⁾

56)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陷穽 弓弩 機械, 各別申飭修舉 廣開捕捉之路爲白乎矣 監考等隨其捕捉 各別施賞 以爲激勸之地爲白齊”.

57)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營將所在之邑 官門不遠之地 聞有虎患 則營將·守令 調發民丁 武士 卽爲圍捕爲白乎矣 先放人姓名 這這馳報本司 以爲論賞之地爲白齊”.

58)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各邑 使各村多備藁索網子爲白有可 聞虎入處山谷爲白去等 民人等 各自持網聚會 一邊遮隔圍住 使不得逃逸 一邊奔告官家 以爲發軍圍捕之地爲白齊”.

59)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癸亥事目內 惡虎多殺人命者捕捉出身 除邊將 儒品閑良軍兵·公私賤人等 給綿布二十疋 捕捉二口以上出身 儒品加資 閑良軍兵 公私賤 加給綿布二十疋 自願入屬禁軍者 聽皮張 竝給捕捉人所給綿布 以各其道戶曹會付木出給 無木則以米折價計給 非噉人惡虎 捉得大虎者 給綿布十疋 小虎漸次減數 元非惡虎 虛辭瞞報 則當該官吏 竝各別治罪亦爲白有置 今亦依此施行爲白齊”.

② 미진한 조건은 추후로 마련하여 분부할 것임.⁶¹⁾

먼저 사료 ⑬을 살펴보면 경기의 각 고을을 삼군문에 나누어 소속시켜 해당 군문에 호환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보고를 받은 해당 소속 군문에서는 포수와 장관을 보내어 포호활동을 하는 것이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1699년(숙종 25)에 규례를 정하였다는 것과 함께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속한 각 읍이 착호분수(捉虎分授)⁶²⁾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표 4>와 같다.⁶³⁾

<표 4> 1699년(숙종 25) 삼군문에 속한 각 읍

삼군문	삼군문에 속한 각 읍
훈련도감	고양·과주·장단·송도·풍덕·교하·적성·마전·삭녕·가평·영평·연천
금위영	양천·인천·남양·김포·시흥·부평·교동·강화·진위·통진·안산·양성·수원
어영청	광주·양근·지평·음죽·죽산·용인·과천·안성·포천·양주·여주·진관장내

삼군문에 속한 각 읍과 포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만기요람』 착호조에는,

⑬-1 숙종 25년 기묘(1699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고양(高陽)·과주(坡州)·장단(長湍)·개성(松都)·풍덕(豐德)·교하(交河)·적성(積城)·마전(麻田)·삭녕(朔寧)·가평(加平)·영평(永平)·연천(漣川) 대호를 잡으면 군을 영솔한 장과 범을 잡은 장은 석새삼베[三升布] 4필·무명 4필·삼베와 모시[苧]가 각(各) 4필씩이며, 먼저 발사한 포수는 석새삼베와 모시가 각 2필씩이며, 두 번째[再] 또는 세 번째로 발사한 포수는 모시 1필·삼베 2필이다. 중호(中虎)를 잡으면 군을 영솔한 장과 범을 잡은 장은 모두 석새삼베 4필·무명과 삼베가 각 2필씩이며, 먼저 발사한 포수는 석새삼베·무명·삼베·모시가 각 1필씩이며, 두 번째로 발사한 포수는 먼저 발사한 자와 같은데 삼베만 없으며, 세 번째로 발사한 포수는 삼베·모시가 각 1필씩이다. 한 번 사냥에

60)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諸道虎患 尙今不止 不可不別爲節目捕捉是白置 各人私自捕捉者賞格乙良 從其形體大小 害人多寡 這這報于本司 以爲登時施賞之地爲白齊”.

61)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1월 기묘조. “未盡條件 追于磨鍊分付爲白齊”.

62) 호랑이를 잡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속한 각 읍과 포상에 대해서 나누어 지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63) 『만기요람』 “軍政編二 訓鍊都監捉虎分授 軍政編三 禁衛營捉虎分授 軍政編三 御營廳捉虎分授.”.

세 마리를 잡은 자에게는 당해 장교는 상주하여 시상을 행한다. 군졸 가운데서 혹은 개인으로 사냥하여 범을 잡은 자에게도 상품을 급여하는데 대년군(待年軍)은 원군으로 승용(陞用)한다.⁶⁴⁾

⑬-2 숙종 25년 기묘(1699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양천(陽川)·인천(仁川)·남양(南陽)·김포(金浦)·시흥(始興)·부평(富平)·교동(喬桐)·강화(江華)·진위(振威)·통진(通津)·안산(安山)·양성(陽城)·수원(水原). 범을 잡은 데 대한 상 : 아병(牙兵)에게는 큰 호랑이나 중 호랑이에게 먼저 총을 쏜 자에게는 무명 3필·삼베 2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 2필·삼베 2필, 작은 범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이 2필씩이다. 장교에게는 대·중·소의 범을 막론하고 각각 무명 3필·소청포가 2필씩이다. 능침(陵寢) 근처에서나 또는 한 번 사냥에서 3마리를 잡은 자에게는 문서로 상주하여 시상을 청구하며, 개인으로서 사냥하다가 범을 잡아서 상납한 자에게는 원군은 무명과 삼베로 시상하며, 대년군은 원군으로 승진시킨다.⁶⁵⁾

⑬-3 숙종 25년 기묘(1699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광주(廣州)·양근(楊根)·지평(砥平)·음죽(陰竹)·죽산(竹山)·용인(龍仁)·과천(果川)·안성(安城)·포천(抱川)·양주(楊州)·여주(驪州)·전관(箭串)·장내(場內). 범 잡은 데 대한 상 : 아병(牙兵)은 대호나 중호에 대하여 먼저 발사한 자는 무명 3필과 삼베 2필이며, 두 번째로 쏜 자와 세 번째로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 2필 삼베 2필씩이며, 작은 범에 대하여는 먼저 쏜 자와 두 번째 쏜 자에게는 각각 무명이 2필씩이다. 장교는 대·중·소의 호랑이를 물론하고 각각 무명 3필·소청포 2필이다. 능침 근처에서 한 번 사냥에서 3마리를 잡으면 보고서를 올려서 행상을 청구한다. 개인이 사냥하여 잡아 바친 자에게는 원군에는 무명과 삼베로 시상하며, 대년군은 원군으로 올린다.⁶⁶⁾

64) 『만기요람』 숙종기묘조, 정식 “肅宗己卯 定式 高陽 坡州 長湍 松都 豐德 交河 積城 麻田 朔寧 加平 永平 漣川 捉大虎領軍將 捉虎將 各三升四疋 木四疋 布 苧各四疋 先放砲手 三升布 苧各二疋 再 三放砲手 苧一疋 布二疋 捉中虎領軍將 捉虎將 各三升四疋 木 布各二疋 先放砲手 三升 木 布 苧各一疋 再放砲手同先放者而無布 三放砲手 布 苧各一疋 一獵三捉者 該將校 草記論賞 軍卒中或私獵捉虎者亦施賞 而待年軍陞元軍”.

65) 『만기요람』 숙종기묘조, 정식, “肅宗己卯 定式 陽川 仁川 南陽 金浦 始興 富平 喬桐 江華 振威 通津 安山 陽城 水原 捉虎賞 牙兵 大 中虎 先放木三疋 布二疋 再放 三放各木二疋 布二疋 小虎 先放 再放各木二疋 將校 毋論大 中 小虎 各木三疋 小青布二疋 陵寢近處 一獵三捉則草記論賞 私獵捉納者 元軍木 布 待年軍陞元軍”.

66) 『만기요람』 숙종기묘조, 정식, “肅宗己卯 定式 廣州 楊根 砥平 陰竹 竹山 龍仁 果川 安城 抱川 楊州 驪州 箭串場內 捉虎賞 牙兵 大 中虎 先放木三疋 布二疋 再放 三放各木二疋 布二疋 小虎 先放 再放各木二疋 將校 毋論大 中 小虎各木三疋 小青布二疋 陵寢近處 一獵三捉則草記論賞 私獵捉納者 元軍木布 待年軍陞元軍”.

사료 ⑬-1은 훈련도감에 속한 각 읍과 포상에 대한 내용으로 대호(大虎)를 잡으면 먼저 발사한 포수는 삼베와 모시가 각 2필씩이며, 두 번째로 쏜 자와 세 번째로 발사한 포수는 각 모시 1필·삼베 2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다. 중호(中虎)를 잡으면 먼저 발사한 포수는 삼베·무명·삼베·모시가 각 1필씩이며, 두 번째로 발사한 포수는 먼저 발사한 자와 같은데 삼베만 없으며, 세 번째로 발사한 포수는 삼베·모시가 각 1필씩이다. 한 번 사냥에 세 마리를 잡은 자에게는 당해 장교는 포상을 행한다. 군졸 가운데서 혹 개인으로 사냥하여 호랑이를 잡은 자에게도 상품을 급여하는데 대년군(待年軍)은 원군으로 승용(陞用)한다. 대호(大虎)와 중호(中虎)에게는 시상하였고 소호(小虎)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상하지 않았다. 작호자는 영군장(領軍將)과 작호장을 동일하게 시상하였고, 군을 영솔한 영군장과 호랑이를 잡은 작호장을 가장 크게 시상하였으며, 큰 호랑이를 잡을 때는 재방과 삼방포수를 동일하게 시상하였지만, 중간 호랑이는 재방포수와 삼방포수를 차이를 두어 시상하였다.

사료 ⑬-2와 ⑬-3은 금위영과 어영청에 속한 각 읍과 포상에 대한 내용으로 작호(捉虎)에 대한 상이 동일하였는데 아병(牙兵)은 대호(大虎)와 중호(中虎)에 대해 먼저 발사한 자는 무명 3필과 삼베 2필이며, 두 번째로 쏜 자와 세 번째 쏜 자에게는 각기 무명 2필과 삼베 2필로 시상하였다. 소호(小虎)를 잡은 아병(牙兵)은 먼저 발사한 자와 두 번째로 쏜 자에게 무명 2필을 시상하였다. 장교는 호랑이의 크기와 상관없이 호랑이를 잡게 되면 각 무명 3필과 소청포 2필을 시상한 것은 장교에게 호랑이를 적극적으로 잡도록 권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능침(陵寢) 근처에서 한 번에 3마리를 잡으면 초기(草記)로 논상하였고, 개인이 호랑이를 잡아 바치면 원군은 무명과 삼베로 시상하고, 대년군(待年軍)은 원군으로 올려 주었다.

사료 ⑭는 1703년(숙종 29) 근교에 호환이 극심하여 삼군문에서 포수를 내어서 잡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중 무사(武士) 이정방(李廷芳)이 호랑이를 잘 잡는다고 하여 서북인(西北人)을 모집하고 이정방이 이끌게 청하는 것으로 해당 조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⁶⁷⁾ 여기서 서북인의 선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7)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11월 정묘조. “時 近郊虎患熾發 三軍門發砲手捕虎 廟堂言 武士李廷芳最勇敢

당시 평안도 지역에서 호랑이가 돌아다녀 물려죽은 사람이 많았다.⁶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북인을 선발하고 호랑이 잡는 부대를 양성함으로써 서북지역에 호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사료 ⑮는 관서의 강변에 있는 무사와 군인을 뽑아 올려 호랑이를 잡는 것에 해당한다. 1699년(숙종 25) 관서의 강변에 있는 무사와 군인을 뽑아 올려 보내는 것에 따라 의주부의 무사 2명과 창수, 포수 16명이 올라와 호조에서 식량을 넉넉히 지급하여 나머지 일행이 모두 오길 기다려 경기 고을에 포호활동을 하도록 한 조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⁶⁹⁾ 즉, 관서 지역에서 호랑이를 잘 잡는 자를 뽑아 경기 고을로 보내는 것이 전례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 ⑯·⑰은 호랑이 포획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각 고을에서 무사 중에서 호랑이 사냥에 능숙한 자를 뽑아 호랑이 포획을 전담시키고 많이 잡도록 전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 병사(兵使)가 포호활동을 담당하고 영장(營將)은 이 병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이 관할하는 수령에게 포호활동을 지시하면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중앙에서 호랑이 포획에 관한 최고책임은 장관이 담당하였고, 지방에서의 최고 책임은 병사가 담당하여 영장(營將)은 이 병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이 관할하는 수령에게 포호활동을 지시하면서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구성원의 편제는 포수 7초(哨), 살수 4초(哨), 사수 2초(哨)로 구성되었다. 호환이 극심할수록 지방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에 있어 영장의 포호활동이 더욱 중요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장제(營將制)는 포호활동과 관련하여 상비군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⁰⁾

사료 ⑱·⑲는 호랑이를 잡는 기계를 만들고 설치하여 대비하도록 권장했다. 1678년(숙종 4) 경상도에 호환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하여 반드시 잡게 할 것을 명하고 있다.⁷¹⁾ 그리고 1702년(숙종 28) 부관 정시응(鄭時凝)이 호랑이 잡는데 익숙하여 여러 기계를 만들어 잡도록 하고 있어

以善捕虎名 請募西北人爲一隊 令廷芳領之 從之”.

68)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10월 병술조. “平安道 惡虎橫行 嚙死人甚衆”.

69) 『비변사등록』 권4, 숙종 25년 12월 무인조. “啓曰 前日捉虎節目中 關西江邊武士 軍人等 擇取上送事知委矣 義州府武士二人 槍砲手十六名 昨已來到 爲先令戶曹 糧餼料米 從優題給 待其畢到 出送畿邑 使之捕捉之意 敢啓 答曰 知道”.

70)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혜안, 1999. 185~186쪽.

71)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7월 임술조. “以慶尙道惡虎嚙殺人命狀啓 傳曰 嚙死之人 至於此多 誠爲矜惻 令本道各別恤典舉行 多般設機 期於必捕之意 亦爲嚴飭分付”.

효과가 있으면 여러 고을에 설치할 계획임이 확인된다.⁷²⁾ 또한 함정과 궁노(弓弩) 및 기계를 수리하여 호랑이를 포획하는데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료 ⑳·㉑·㉒는 호환을 대비하고 호랑이를 잡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조목이다.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를 대비하여 새끼줄 그물을 많이 만들거나 사료 ㉓는 지방에서의 호랑이 포획에 대한 조목이다. 지방에서 병사(兵使)가 포호활동을 담당하고 영장(營將)은 이 병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이 관할하는 수령에게 포호활동을 지시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료 ㉔에 따르면 추후에 미진한 조건을 마련한다고 나와 있다. 즉 호환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착호절목’에 미진한 부분을 적극 개정하고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호환을 막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㉕ 강원도(江原道) 낭천현(狼川縣)에서 12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강원도 한도에서 6, 7년 이래로 호랑이에게 물린 수효가 3백여 인의 많은 숫자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이(變異)이다.⁷³⁾

㉖ 우의정 신완(申琬)이 아뢰기를 “근년에 사나운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근심이 8도에 두루 있어 제도(諸道)의 장문(狀聞)이 전후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관가(官家)에서 들어서 알지 못한 것과 방백(方伯)·수령(守令)의 듣지 못한 것이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 놀랍고 참혹함이 어떻겠습니까? 세전(歲前)부터 기전(畿甸) 근처가 이런 근심이 더욱 심하고, 양주(楊州)·포천(抱川)·가평(加平) 근처는 혹 인가로 뛰어들어 와 사람을 상해한 것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 이 어찌 심히 걱정되지 않겠습니까?”⁷⁴⁾

㉗ 이번 10월 2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할 때에 우의정 신완(申琬)이 아뢰기를 “ [...] 근래에 듣건대 사나운 호랑이가 기내(畿內)를 횡행하는 것이 많아서 심

72)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8년 1월 임오조. “右議政申所啓 且前府使鄭時凝 習於捉虎故 前日出送砲手之時 使之同去 設置器械於呂里 以爲捕捉之地 而近日守令”.

73)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 12월 을해조. “虎噬之數 多至三百餘人 亦一變異也”.

74)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8년 1월 임오조. “右議政申所啓 近歲惡虎噬殺人命之患 遍於八路 而諸道狀聞 前後相續 其中官家之不得聞知 方伯守令之不得聽聞者 又不知其幾何 其爲驚慘當如何哉 自歲前畿甸近處 此患尤甚 楊州 抱川 加平近處 則或有突入人家 傷害人物者 不可勝數云 此豈非可憂之甚者乎”.

지어 대낮에도 사람을 몰어 죽이고 여염집에 뛰어드는 환난까지 있다고 하는데도 수령들이 비단 뒤를 밟아 잡을 계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몰려 죽은 자를 보고하지 않아 전후로 몰려 죽은 자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수령이 이미 보고하지 않으니, 감사 역시 계문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전이 이와 같다면 외방(外方)도 알 수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전날에 삼군문(三軍門)에서 포수(砲手)를 내보내어 잡은 일이 있었으나 역시 폐단이 있어 정지했었습니다.” [...] 75)

사료 ②5는 1701년(숙종 27) 강원도 낭천현(狼川縣)에서 12인이 호랑이에게 몰려 죽고 6~7년 이래로 강원도에서 호환을 당한 인명피해의 수가 3백여 명에 이른 내용이다. 사료 ②6은 1702년(숙종 28) 팔도(八道)에 호환이 발생하여 끊임없이 장계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수령 등이 듣지 못한 호환이 상당수 되어 피해가 참혹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사료 ②7은 1702년(숙종 28) 호환이 빈번하게 발생하여도 수령들이 잡으려고 하지 않고 호환에 의한 피해보고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현황을 알지 못하고 삼군문에서도 호랑이 사냥을 했으나 수령들이 사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중단한 내용이다.

1699년(숙종 25) 호환을 방지하기 위해 ‘착호절목’을 반포하고 모든 이들에게 포호활동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런데 포호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호환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17세기 말의 각종 포호활동의 폐단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 호환이 발생해도 관료의 장계는 보고되지 않고 삼군문에서 포수를 보내 잡게 했지만 수령들이 사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냥이 중단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호환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호환을 해결하고 백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후 1703년(숙종 29) 비변사에서 주요 개정 조목을 수정하여 ‘착호절목’을 반포하였는데, 해당되는 조목은 다음과 같다.

75)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8년 10월 임오조. “今十月廿日大臣 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申所啓 [...] 近聞 惡虎之橫行於畿內者 至有白晝噴殺 突入閭家之患 而守令不但不爲跟捕之計 竝與噴死者而不報 前後噴死者 不知其幾 而守令既不報知 而監司亦無啓聞之事 畿甸如此 外方可知 誠可痛歎 前日或有三軍門出送砲手捕捉之事 亦以有弊停止矣 [...]”.

②⑧ 각 고을 각 마을 중에서 성실하고 영리한 자를 가려 착호장(捉虎將), 심종장(尋蹤將)이라고 칭하며 임명장을 만들어 준다. 그리하여 마을에 호환(虎患)이 있으면 심종장은 급히 면임(面任)에게 고해야 한다. 면임은 한편으로 관가에 보고하며 한편으로는 잘 쏘는 포수에게 알려 착호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영솔하고 따라가 잡도록 할 것.⁷⁶⁾

②⑨ 각 마을에서는 서울 군문에 번(番) 서는 군사나 속오군을 막론하고 잘 쏘는 자를 가리고, 두 건의 문서를 만들어 하나는 관가에 두고 하나는 면임에게 둔다. 그리하여 호환이 생겼음을 들으면 즉시 모이게 해야 한다. 또 각기 마을에 분부하여 긴 창을 만들게 하거나 혹은 새끼줄그물을 만들게 하여 포위하여 잡을 때의 소용에 대비해야 한다.⁷⁷⁾

③⑩ 범을 잡는 방법으로는 함정을 파거나 활을 쏘아 잡으며 혹은 그물로 에워싸거나 또는 총을 쏘아 잡는 등 그 규례는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수령들이 심상히 여겨 직접 검찰하고 감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소치이니 별도로 격려시키는 도리가 없을 수 없다. 그전에는 반드시 손수 쏘아 죽인 자를 논상하였다. 이 때문에 수령과 변장 중에는 간혹 공을 바라는 자가 있어 번번이 자신이 죽었다고 하였으니 성실이 결여된 일이었으며 다만 분수없이 제멋대로 하는 데에 돌아갈 뿐이었으니, 금후로는 손수 쏘아 죽인 자를 전례대로 논상하는 이외에, 수령과 변장들도 잡은 숫자를 통계하여 역시 논상하는 것으로 규식을 정해 시행할 것임.⁷⁸⁾

③⑪ 기묘년의 범 잡는 절목 내에 인명을 많이 죽인 것 한 마리를 잡았을 경우, 출신이면 변장에 제수하고 유품(儒品), 한량, 군병, 공사천 등은 면포 20필을 지급한다. 두 마리를 잡으면 출신과 유품은 자급을 더하고, 한량과 군병 및 공사천 등에게는 면포 20필씩을 더 준다. 또 금군에 소속되기를 자원하는 자는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76)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9년 정월 을해조. “各邑各里中 擇其勤幹伶俐者 稱以捉虎將尋蹤將 成差帖 凡有虎患於村閭 尋蹤將急急告于面任 一邊馳報官家 一邊知委善放砲手 使其捉虎將 領率跟捕爲白齊”.

77)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9년 정월 을해조. “各里勿論京軍門上番軍士與東伍軍 抄擇其善放者 成冊兩件 一置官家 一置面任處 聞有虎患 卽令聚會爲白乎跡 分付各其里中 或造長鎗 或造囊網 以備圍捕時所用爲白齊”.

78)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9년 정월 을해조. “捉虎之方 或以穿弩 或以圍網 或以砲射 不一其規 而未見有實效者 由於守令之視爲尋常 不宜親自檢督之致 不可無別爲激勵之道是白置 在前必以手自射殺者論賞 故 守令邊將中 間有希功者 輒稱手殺 事欠誠實 適足爲冒濫之歸是白如乎 今後乙良 手自殺射之人 依例論賞之外 守令邊將段置 通計所捉之數 亦爲論賞事 定式施行爲白齊”.

지급할 면포는 각기 도에 있는 호조의 회부목(會付木)으로 지급하며 무명이 없으면 미곡으로 값을 환산해 준다. 사람을 해친 못된 범이 아니더라도 큰 범을 잡은 자에게는 면포 10필을 주고, 작은 범일 경우 점차로 수량을 줄인다. 또한 원래 못된 범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속여 보고한 자는 해당 관리를 각별히 치죄하였는데 이번에도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 수령과 변장은 함정이나 궁노로써, 혹은 그물로 에워싸거나 총을 쏘아 잡았거나, 또 어떤 포수가 잡았는지를 막론하고 한 고을과 한 진(鎭)의 도합숫자를 통계하여 큰 범과 중간 범 3마리 이상이면 승진시키고 6마리 이상이면 자급을 더한다. 또한 작은 범이면 2마리마다 큰 범과 중간 범 1마리로 환산하여 시행할 것임.⁷⁹⁾

㉔ 미진한 조건은 추후로 마련할 것임.⁸⁰⁾

1703년(숙종 29)에 반포한 ‘착호절목’을 살펴보면 포호활동이 시급한 사안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포호활동을 장려하고자 주요 사항을 개정하고 수정한 점이 확인된다.

사료 ㉘·㉙는 착호장(捉虎將), 심종장(尋蹤將)의 역할에 대한 조목이다. 각 고을 각 마을에서 성실하고 영리한 자를 가려 뽑아 임명장을 만들어 지방에서 호랑이 사냥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료 ㉚은 1683년(숙종 9)에 수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잡는데 대한 포상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건의하여 윤희 받았다는 조목이다. 그리고 비변사는 이에 대하여 장교는 끝에 가서 그들이 잡은 호랑이의 개수를 한꺼번에 계산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삼군문의 포수는 해당 영문에서 시상하고 각 고을 군인들은 전의 사목대로 호조에서 내주도록 할 것을 건의하여 윤희 받았다.⁸¹⁾

79)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9년 정월 을해조. “己卯捉虎節目內 惡虎多殺人命者 捕捉一口 出身除邊將儒品 閑良軍兵 公私賤人等 給綿布二十疋 捕捉二口 出身儒品加資 閑良軍兵 公私賤人等 加給綿布二十疋 自願入屬禁軍者聽 所給綿布 以各其道 戶曹會付木出給 無木則以米折價計給 非噉人惡虎而捉得大虎者 給綿布十疋 小虎漸次減數 元非惡虎 虛辭瞞報者 當該官吏 各別治罪亦爲白有置 今亦依此施行爲白乎矣 守令 邊將乙良 毋論奔弩 圍網 砲射 砲某人所捉 通計一邑一鎭中 都數大中虎竝三頭以上者乙良陞級 六頭以上者乙良 加資 而小虎則每二頭 以大中虎一頭 施行爲白齊”.

80)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9년 정월 을해조. “未盡條件乙良 追後磨鍊爲白齊”.

81)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5년 12월 갑술조. “啓曰 捉虎節目中 各人等私自捕捉之賞 癸亥年既有分等定式 而京外將校等 領率砲手 軍人等 捕捉賞格 未及磨鍊矣 將校則未終計其所捉多少 一時論賞 先放人賞布五疋 皮令則一依事日出給 先放人 三軍門砲手 則自該營施賞 各邑軍人 則亦依前事日 令戶曹出給事 分付兵曹各軍門 及諸道何如 答曰 允”.

그리고 사료 ㉑은 수령과 변장이 함정이나 그물로 에워싸거나 조총으로 직접 잡지 않더라도 호랑이를 잡은 숫자를 통계하여 보상 하도록 하는 조목이다. 이는 수령과 변장들이 포호활동을 하여도 자신들이 직접 잡지 않은 것은 아무런 포상도 없었기 때문이다.⁸²⁾ 그렇기 때문에 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새로 반포된 ‘착호절목’에 포상에 대한 조목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료 ㉒의 조목에 따르면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 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나 이후 1720년(경종 즉위) ‘착호절목’의 포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 부분의 규례를 다시 정하면 폐단이 더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포상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청하였다.⁸³⁾ 즉 ‘착호절목’은 포상부분을 거듭 수정하고 반포하여 적극적으로 포호활동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호랑이를 잡아서 받는 포상에 대한 폐단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그들이 행한 포호활동에 대한 폐단 문제는 호랑이 사냥뿐만 아니라 백성에 대한 수탈 문제와 더불어 호피 공납제의 폐단으로 확대 되었으며 실질적인 효용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본래 ‘착호절목’은 모든 백성이 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절목이다. 이렇게 포호정책의 실효성은 모든 백성이 호랑이 사냥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호랑이를 잡았다. 또한 이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호피를 공납하여 포호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시되었다.⁸⁴⁾ 이처럼 호환을 방지하여 백성에게 해가 되는 호랑이를 사냥하고 이를 통하여 얻는 호피는 중요한 공납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포호정책은 두 가지의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었다. 그러나 포호정책이 실시되면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삼군문

82)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8년 10월 임오조. “近來虎患愈往愈甚 小臣以申飭譏補之意 累度陳達於榻前 且於前日箇中 亦有所論矣 凡事必有勸獎然後 乃可有効, 多數捕捉之守令 別爲論賞, 以爲激勸之地, 而見沮於備局, 回啓還收 其賞典今無可論矣 第聞其時守令 或多爭捉慕效 捉得惡虎 而厥後無一人捉得者 可見其守令之怠忽 係於朝家之激勸與否矣”.

83) 『비변사등록』 권7, 경종 즉위년 9월 병술조. “兵曹判書李晚成所啓 捉虎事目中 嚙殺人命二頭以上 有加資之例 而近來紀綱頹弛 詐僞百出 雖非手自捕捉者 若得二張虎皮 則監兵使狀請 輒皆蒙賞 加資之屑越 極矣 防塞此路 未爲不可 而若一切永塞 則當此惡虎縱橫之日 恐無以激勸捕捉 不可無變通之道 曾前則捕賊三名以上加資 而後改定 以五名以上 捉虎之賞 亦依此例 五頭以上加資事 更爲定式 則似無濫雜之弊矣 至於領將賞加 曾無規例 而丙戌年間南兵使尹就五 以別定領將捉虎事 馳啓論賞之故 厥後 引以爲例 監兵使幕屬之稱以領將請賞者 率多冒濫 其弊不可不杜 此後則領將論賞之典 永爲防塞 何如 領議政金曰 尹就五時事 必有實狀 故乃有賞加之舉 而此路一開 則奸僞必多 論賞必廣 不可不防塞矣 右副承旨金雲澤曰 臣曾在兵曹見之 則郎廳 例爲尺量其皮 而還爲出給 故不無再納之弊 若仍爲受置 則可杜奸僞之路 自無濫賞之慮矣 晚成曰 承旨所達 是矣 工曹判書閔鎮遠曰 曾前小臣 爲郎官時 則受置兵曹 無還給之事矣 右議政李曰 其皮則留置 參酌給價好矣 上曰 參酌題給 可也 晚成曰 五頭以上加資事 永爲定式乎 李曰 三四頭以下 米布不可不量給矣 上曰 依爲之”.

84) 김동진, 앞의 책, 2009, 194~195쪽.

의 군사들이나 지방의 수령 등 포호활동에 임하는 자들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2. 민·관의 포호활동과 성과

조선후기 도성과 경기지역의 포호활동은 삼군문에서 전담하여 시행되었다. 삼군문에서 전담하기 전에는 관서의 군사를 동원하여 잡았지만 삼군문에서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포수와 장관을 대동하여 호랑이를 사냥하였다. 또한 지방에서는 병사와 영장을 대동하여 사냥하였다. 그리고 민간포수의 등장으로 포호활동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17·18세기의 포호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17·18세기의 포호활동 현황

시기 \ 착호자	삼군문 소속	민간	포획 수
17세기	6회	1회	13마리 이상
18세기	44회	16회	58마리 이상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본고 <부록> 17·18세기 호랑이 출현·포획 및 인명과 가축피해의 현황 자료 참조.)

<표 5>와 같이 포호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삼군문 소속과 민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7세기의 포호활동을 살펴보면 삼군문 소속의 경우 6회 민간의 경우 1회, 포획 수는 13마리 이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삼군문 소속은 44회, 민간은 16회, 포획 수는 53마리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포호정책이 시행된 시점과 동일하게 호랑이의 포획 수도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한성부와 경기지역의 포호활동

한성부와 경기지역의 포호활동은 삼군문에서 담당하고 포수들과 장관들을 대

동하여 행해졌다. 삼군문체제 확립 이전에는 주로 훈련도감에 속한 포수를 중심으로 포호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삼군문체제로 전환되면서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은 도성과 경기지역을 3군대로 나누어 포호활동을 실행하였다. 또한 관서의 선방포수(善放砲手)를 보내어 사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⁸⁵⁾ 한성부와 경기지역의 포호활동을 살펴보면 <표 6>와 같다.

<표 6> 한성부와 경기지역의 포호활동

번호	연도	날짜	착호자	신분/소속	장소	포획 수 (마리)
1	선조 36년 (1603)	2월 13일 (庚子)	좌우포도장	포도청	창덕궁의 소나무 숲속	-
2	선조 36년 (1603)	3월 18일 (甲戌)	훈련도감 소속 포수	훈련도감	창덕궁, 함춘원(含春苑)	-
3	선조 40년 (1607)	7월 18일 (戊申)	훈련도감 소속 포수	훈련도감	창덕궁	-
4	광해군 14 년(1622)	11월 13일 (乙巳)	훈련도감 소속 포수	훈련도감	창덕궁 후원	-
5	인조 4년 (1626)	12월 17일 (乙卯)	도감대장 등	훈련도감	인왕산 곡성(曲城) 밖, 인경궁(仁 慶宮)	1
6	인조 10년 (1632)	6월 10일 (丙子)	훈련도감 소속 포수	훈련도감	서소(西所)	-
7	숙종 23년 (1697)	6월 29일 (丁丑)	어영청 장교	어영청	양주	-
8	숙종 28년 (1702)	12월 13일 (己丑)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홍제원(弘濟院)	-
9	숙종 29년 (1703)	11월 26일 (丁卯)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근교(近郊)	-
10	숙종 37년 (1711)	11월 27일 (壬子)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서부아현(西部阿峴)	-
11	숙종 38년 (1712)	11월 19일 (戊戌)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공릉(恭陵)과 순릉(順陵)	-
12	영조 9년 (1733)	11월 7일 (癸丑)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양주, 포천	-
13	영조 15년 (1739)	6월 1일 (丙子)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전곶목장(箭射牧場)	-
14	영조 16년 (1740)	6월 9일 (庚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한강에서 두모포(豆毛浦), 외남산 (外南山) 서쪽 정아현(貞兒峴) 근 처	-
15	영조 20년 (1744)	1월 9일 (丁亥)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사직의 서쪽 담장	-
16	영조 23년 (1747)	1월 9일 (丁卯)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동부관내 동대문	-

85) 『비변사등록』 권12, 영조 31년 2월 을해조 “司啓辭 昨年秋 因畿內虎患之熾盛 關西善放砲手十名 分送各邑 使之獵捉矣”.

17	영조 23년 (1747)	12월 1일 (丁卯)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전농리(典農里), 청량리(靑良里)	-
18	영조 23년 (1747)	12월 2일 (戊午)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도성(都城)	-
19	영조 26년 (1750)	1월 7일 (庚午)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사재감계(司宰監契)	-
20	영조 27년 (1751)	5월 1일 (辛未)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모회관(慕華館) 풀밭	-
21	영조 28년 (1752)	1월 2일 (壬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박진성의 집	-
22	영조 28년 (1752)	1월 11일 (壬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본성의 담 밑, 부아현(負兒峴)	-
23	영조 28년 (1752)	1월 12일 (壬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외남산	-
24	영조 28년 (1752)	2월 16일 (壬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본동	-
25	영조 29년 (1753)	4월 10일 (癸酉)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도저동	-
26	영조 29년 (1753)	8월 26일 (癸酉)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전꽃마장(箭申馬場)	-
27	영조 29년 (1753)	10월 26일 (癸酉)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조전계(租田契)에 사는 보인(保人) 김귀재(金貴才)와 포수(砲手) 임옥경(林玉京) 등의 집 뒤 밭	-
28	영조 29년 (1753)	11월 15일 (癸酉)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경복궁 안 접송정(接松亭)	-
29	영조 30년 (1754)	11월 8일 (甲戌)	포수	미상	경기고을	-
30	영조 30년 (1754)	12월 26일 (甲戌)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본성 담장안	-
31	영조 31년 (1755)	1월 25일 (乙亥)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주성리(鑄城里) 강 주변 경성	-
32	영조 31년 (1755)	1월 27일 (乙亥)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외남산	-
33	영조 31년 (1755)	2월 25일 (乙亥)	관서의 선방포수	관서	경기	22
34	영조 32년 (1756)	9월 2일 (丙子)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와서계(瓦署契)	-
35	영조 32년 (1756)	9월 8일 (丙子)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와서계(瓦署契)	-
36	영조 33년 (1757)	4월 23일 (甲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북문(北門)안	1
37	영조 33년 (1757)	5월 18일 (戊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동오름(東五陵)의 국내(局內)	-
38	영조 33년 (1757)	10월 16일 (乙亥)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공릉(恭陵), 순릉(順陵)	3
39	영조 41년 (1765)	10월 18일 (庚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미상	-
40	영조 41년 (1765)	10월 20일 (乙酉)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미상	-
41	영조 43년 (1767)	1월 23일 (丁亥)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사이리계(沙阿里契), 손가정(孫家亭)	-
42	영조 45년 (1769)	3월 24일 (丁未)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기전(畿甸)	-

43	정조 2년 (1778)	5월 10일 (己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성 밖	1
44	정조 2년 (1778)	10월 4일 (庚申)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성 밖	1
45	정조 3년 (1779)	11월 3일 (癸未)	삼군문소속 포수	삼군문	성 안	-
46	정조 7년 (1783)	1월 28일 (庚申)	훈련대장 구선복 등	삼군문	인왕산 밖과 한북문 밖	2
47	정조 7년 (1783)	5월 22일 (壬子)	박성창	삼군문	외남산	1
48	정조 8년 (1784)	11월 3일 (甲寅)	훈련도감소속 포 수	삼군문	아차산(阿差山)	1
49	정조 14년 (1790)	3월 30일 (庚戌)	총융청소속 포수	오군영	옹암동(甕巖洞)	5
50	정조 17년 (1793)	11월 18일 (丁未)	최익손 등	삼군문	수락산(水洛山)	1
51	정조 18년 (1794)	1월 6일 (甲午)	향군(鄉軍) 등	오군영	양근(楊根)	1
52	정조 18년 (1794)	2월 13일 (辛未)	본청의 아병(牙 兵) 황우정 등	삼군문	아차산(阿差山)	2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본고 자세한 내용은 본고 <부록> 17·18세기 호랑이 출현·포획 및 인명과 가축피해의 현황 자료 참조.)

위의 <표 5>를 살펴보면 한성부 및 경기지역의 포호활동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다. 포호정책은 호환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호피 공납제를 실시하여 그 포획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다. 중앙정부는 호환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다 안정시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렇기에 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포수와 장관으로 구성된 삼군문 소속의 군사들이 한성부 및 경기지역에서 포호활동을 하였고 관서의 선방포수를 보내어 포호활동을 한 것도 확인되었다.

③ 창덕궁(昌德宮)의 소나무 숲 속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물었다. 좌우포도장(左右捕盜將)에게 수색해 잡도록 명하였다.⁸⁶⁾

④ 원유사(苑圍司)가 아뢰기를, “창덕궁(昌德宮)의 후원과 함춘원(含春苑) 등지에 호표(虎豹)가 출입하는데 여염의 개를 물어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난 후에는 그물이 없어져 군사를 모아도 도움이 없으니,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수포(手砲)를 잘 쓰는 사

86) 『선조실록』 권159, 선조 36년 2월 경자조. “昌德宮松林間 有虎逐人 命左右捕盜將 跟尋捕捉”.

람을 시켜 발자국을 찾아 기필코 잡게 하소서.”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⁸⁷⁾

㉔ 양주(楊州) 지역에 흉악한 호랑이가 인명(人命)을 많이 살해하므로, 어영청(御營廳)에 명하여 장교(將校)를 내보내어 잡도록 하였다.⁸⁸⁾

사료 ㉓은 1603년(선조 36) 창덕궁의 소나무 숲 속에서 호환이 발생하자 좌우 포도장(左右捕盜將)에게 수색하여 잡도록 명하는 내용이다. 사료 ㉔은 1603년(선조 36)은 창덕궁(昌德宮)의 후원과 함춘원(含春苑) 등지에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나 여러 마리의 개를 물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훈련도감에서 포수를 동원하여 잡도록 아뢰는 내용이다. 사료 ㉕은 1697년(숙종 23) 양주 지역에서 호환이 발생하자 어영청에 명하여 호랑이를 잡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료 ㉓~㉕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의 포호활동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왜침을 막기 위해 포수양성에 주력하여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삼군문에서 한성부와 경기지역을 담당하기 전 임시로 포도청에서 포호활동을 하는데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냥 방식 역시 변화하여 조선전기에는 포호활동을 할 때 창과 그물을 위주로 사냥하였다. 전란 이후 그물이 사라지고, 군사를 동원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자 훈련도감에 속한 포수를 동원해서 사냥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군제의 개편에 따라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에서 도성과 경기지역의 포호활동을 담당하였다. 즉 포수양성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조선후기의 포호활동은 대부분 포수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창이나 화살, 그물 등과 같이 재래식 사냥 도구를 이용해서 잡기도 하였으나 포수체제로 삼군문의 포호활동이 전환되어 조총을 주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7·18세기의 포호활동의 수단으로 조총이 보급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랑이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포수가 월등히 많이 나타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⁸⁹⁾

87) 『선조실록』 권160, 선조 36년 3월 갑술조. “苑圃司啓曰 昌德宮後苑及含春苑等處 虎豹出入 閭閻之狗 多有攬傷 亂後無網 聚軍無益 請令訓練都監 善手砲人 尋蹤必捕 傳曰 允”.

88) 『숙종실록』 권31, 숙종 23년 6월 정축조. “楊州地惡虎多殺人命 命御營廳 出送將校捕之”.

89) 김동진·이향, 앞의 책, 2011, 172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능에 호환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능에 포수들을 보내 호랑이를 사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숙종 이후 임금들의 능행이 잦아졌다. 그런데 능은 백성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라 산림이 우거져 호랑이의 서식지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정기적으로 삼군문의 포수를 교대로 보내 능에서 호환을 막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⁹⁰⁾ 이와 함께 호환이 발생하면 삼군문에 속한 포수장관(將官)이 인솔하여 포호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호환이 발생한 지역에 호랑이 물이꾼을 강제로 모집하기도 하였는데 농사철에는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철수하였다가 동원되기도 하였다.⁹¹⁾

2) 민간인의 포호활동 현황

조선후기에는 전문적인 포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을 가진 백성들도 호랑이를 사냥하였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후기의 포호정책은 모든 민간에 적극 장려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호활동에는 모든 신분을 막론하고 호랑이 사냥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민간인의 포호활동

번호	연도	날짜	착호자	신분/소속	장소	포획 수 (마리)
1	선조 33년 (1600)	11월 26일 (丙寅)	이종의	전(前) 현감	풍양 땅	1
2	광해군 8년 (1616)	6월 2일 (辛丑)	이선	곡산군수	미상	1
3	광해군 14년 (1622)	1월 16일 (壬子)	윤계륜	서산군수	미상	7
4	인조 3년 (1625)	1월 22일 (辛未)	귀화인 (歸化人)	미상	결성(結城)	1
5	인조 11년 (1633)	6월 6일 (丙寅)	牧子	미상	미상	1
6	숙종 12년 (1686)	3월 4일 (戊午)	정광홍	함경도 부령 기병	함경도	1
7	숙종 28년 (1702)	12월 18일 (甲午)	미상	미상	안현(鞍峴)	1

90)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제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190쪽.

91) 『승정원일기』 영조 1년 4월 기사조. “又以御營廳言啓曰 以光陵內虎患 因禮曹草記 本廳牙兵五十名 教鍊官率領發送 以爲搜捕之地矣 連按教鍊官手本 則陵內外林藪深僻之處 遍踏窮搜者 已至一望 竟無蹤跡云 蓋其虎患 似是一時往來 元非陵內常留者 而草樹茂密 尋蹤誠難 且當方農之節 楊抱兩邑逐虎軍之連續調發 亦甚悶慮 今姑撤還 更觀前頭形止 出送捕捉之意 敢啓 傳曰 知道 ”

8	숙종 29년 (1703)	10월 10일 (壬午)	김순	군수	-	5
9	숙종 29년 (1703)	10월 15일 (癸未)	김순	군수	-	8
10	영조 8년 (1732)	윤5월 3일 (戊子)	우창의 아들	백성	전라도 남원부(南原府)	1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본고 자세한 내용은 본고 <부록> 17·18세기 호랑이 출현·포획 및 인명과 가축피해의 현황 자료 참조.)

<표 7>과 같이 민간인이 포호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민간인의 포호활동을 통해서 호환이 시급한 사안이고 빠른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시 포호정책의 취지가 모든 민간이 적극적으로 호랑이 사냥에 참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우선 위의 경우와 같이 관료로 있었던 이들이나 백성 등 전문적으로 호랑이 사냥을 담당하는 군사들이 아닌 이들이 활동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③⑥ 함경도 부령(富寧) 기병(騎兵) 정광홍(鄭光弘)의 아우 정인홍(鄭仁弘)이 범에 물리게 되자, 정광홍이 도끼를 메고 그 앞으로 바짝 달려들어 범을 죽이고 아우를 구제하였다고 북병사(北兵使) 원상(元相)이 포상할 것을 장계로 청하였는데, 이를 병조에 내려 복주(覆奏)케 하고, 특별히 군역(軍役)을 면제해 주었다.⁹²⁾

③⑦ 공주(公州) 사람 박진귀(朴震龜)가 그의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은 것을 통분하게 여겨 산 아래에다 집을 짓고 함정을 설치해 호랑이를 많이 죽였다고 감사가 장문(狀聞)하니, 복호(復戶)하였다.⁹³⁾

③⑧ 좌의정 신만(申晩)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본도(本道)는 호환(虎患)이 낭자하니 상을 내걸고 사냥꾼을 모집하는 일을 갑술년(甲戌年)의 예에 따라 시행하는 일입니다. 근래 호환이 더욱 심하니 실로 민망스럽습니다. 사냥꾼을 모집하는 길은 상을 베풀

92) 『숙종실록』 권17, 숙종 12년 3월 무오조. “咸鏡道富寧騎兵鄭光弘 弟仁弘 爲虎所嚙 光弘擔斧直前 殲虎救弟 北兵使元相狀請褒賞 下兵曹覆奏 特免軍役”.

93) 『영조실록』 권85, 영조 31년 9월 임신조. “公州民朴震龜 勸其父死於虎 結屋山下 設機斃多殺虎 監司狀聞 復其戶”.

는 것이 가장 좋으니 장청한대로 허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⁹⁴⁾

사료 ⑳은 1686년(숙종 12) 함경도 부령(富寧) 기병(騎兵) 정광홍(鄭光弘)의 아우 정인홍(鄭仁弘)이 호랑이에게 물리자 그의 형이 도끼를 메고 호랑이를 죽이고 동생을 구제하여 군역을 면제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료 ㉑은 1755년(영조 31) 공주(公州) 사람 박진귀(朴震龜)가 산 아래에서 집을 짓고 함정을 설치하여 호랑이를 많이 잡아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료 ㉒은 1759년(영조 35) 경상도에 호환이 많이 발생하자 상을 내걸고 사냥꾼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료 ㉑~㉒의 사례를 살펴보면 삼군문의 소속이 아닌 이들의 포호활동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사료 ㉑을 살펴보면 포호활동은 아니지만 호랑이에게 물린 아우를 살리기 위해 호랑이를 잡아 군역면제를 받은 것이 나타난다. 사료 ㉒은 호랑이를 잡은 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백성이나 관직에 머물렀던 이들에 대하여 군역면제를 하거나 관직을 제수하여 신분별 포상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료 ㉒은 강원도에 호환이 낭자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냥꾼을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삼군문에 속한 포수가 아닌 전문적인 사냥꾼을 동원하여 호랑이 사냥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포호활동은 삼군문에 속한 포수들이나 관서의 선방포수를 비롯하여 백성에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호랑이를 사냥하면 보상을 주었다.

이처럼 포호활동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호랑이를 잡은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 군역면제를 실시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호랑이를 많이 잡는 이들은 특별히 부역면제나 조세를 감면하여 포호활동의 목적을 더욱 부각시키고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랑이를 잡기 위해 사냥꾼을 모집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간포수의 등장은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병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의 지방군은 본래 속오군제(束伍軍制)가 시행되면서 백성들은 각 지방에 속오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어 국가 방어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지방 수령의 반발과 재정 문제

94) 『비변사등록』 권13, 영조 35년 9월 기묘조. “左議政申所啓 本道虎患狼藉 懸賞募獵 一如甲戌年例施行事也 近來虎患尤甚 誠可悶也 募獵之道 莫如施賞 依狀請許施似好矣”.

등으로 효종 이후 폐지되었고 지방수령이 병력의 관리와 조직 및 훈련을 맡은 겸영장제(兼營將制)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전담영제가 폐지되고 지방에서 민폐를 줄인다는 명목하게 소집훈련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또한 영조 중엽부터 속오군의 구성은 양반은 제외되고 천민으로 채워지게 되어 농민과 천민만의 의무가 되었다.⁹⁵⁾ 이러한 양상으로 백성들의 군역의무에 대한 신분적 갈등이 고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유사시 필요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포호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으로 충원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⁹⁶⁾ 따라서 포호활동에 백성들도 참여한 것은 백성에게 해가 되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력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하고 군역의무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호환에 시달리는 민심을 수습하고자 포호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백성에게 해가 되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것은 그만큼 호환이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호환에 대한 국가 대응책을 살펴보면 포호정책은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호랑이를 사냥하였다. 그리고 모든 민간에 적극 장려하여 포호활동에 임하게 하였다. 즉 민생안정의 추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던 중앙정부의 성과로 정의내릴 수 있다.

95)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91~98쪽.

96) 김동진·이향, 앞의 책, 2011, 175쪽.

IV. 호환 대응책의 한계

호환 대응책의 본래 취지는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호랑이를 잡고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의미에서 위민제해(爲民除害)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⁹⁷⁾ 호랑이로 인한 피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국가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고 포호정책을 실시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를 잡았으며, 이 외의 대응책을 실행하여 호환을 당한 이들에게 보상을 베풀어 민심을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호환대응책 중 포호정책은 백성에게 해가 되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것이었고, 이때 얻게 되는 호피는 공납품으로 진상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호랑이를 사냥하는 자들은 그에 따른 포상을 받았다. 그런데 포호정책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를 잡는 자에 대한 포상문제와 호피 공납품에 대한 수요 문제로 한계에 이른다. 특히 17·18세기의 포호정책의 폐단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⁹⁸⁾

포호정책은 민생의 안전을 도모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⁹⁹⁾ 하지만 포호활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백성에 대한 수탈로 변화하여 이와 더불어 사냥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호랑이를 잡아서 보고하여 포상을 받는 것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받거나, 호환의 피해를 알리지 않고 누락하여 백성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착호절목’을 재반포하고 포호활동을 통해서 받는 포상을 거듭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랑이를 사냥하는 이들의 요구는 증가하였고 포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포호활동을 실행하는 군사들이 호랑이 사냥을 중단하거나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폐단이 빈번하자 ‘착호절목’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하였다.

③⁹) 각 고을 중에서 착실하게 범을 잡은 자는 호속목(虎贖木)을 면제할 것임. 그러나 경내에 현저하게 호환이 있었는데도 잘 잡지 못한 자는 그 감색(監色)은 형추할 것

97) 김동진, 앞의 책, 2009, 69쪽.

98) 정연식, 앞의 책, 2004, 144~145쪽.

99) 김동진, 앞의 책, 2011, 159쪽.

이며 수령도 또한 논죄할 것임.¹⁰⁰⁾

사료 ㉔의 호속목(虎贖木)에 대한 조목은 해마다 호랑이를 사냥하여 백성의 피해도 없애고 그 가죽은 진상하게 하여 방물(方物)에도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적합한 것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쌀과 베로 책정하여 받아 호피를 사서 쓰는 비용에 충당하려는 취지였다.¹⁰¹⁾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호환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조차 호속목을 거두어 폐단이 발생하고 백성의 부담이 커지게 되자 1724년(영조 즉위) 호속목에 대하여 혁파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⁰²⁾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호환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수령들과 백성의 포호활동 기피, 호속목(虎贖木)의 폐단 등의 이유로 포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그 피해가 계속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㉕ 사간 최계옹(崔啓翁)과 정언 박봉령(朴鳳齡)이 아뢰기를 [...] 요사이 듣자니 제도의 수령들이 호랑이를 잡는다고 칭탁하고 사실은 백성의 공을 가로채서 자기의 공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잡은 것을 사서 자기의 공으로 삼기도 하면서 어수선하게 속이고 상전(賞典)만을 바라니 이 어찌 나라에서 당초에 격권한 본의이겠습니까? [...] 지금부터는 제도 수령으로서 호랑이를 잡은 자는 다시는 중관(重官)으로 품계를 올리지 말고 이로써 상을 바라는 폐습을 막으시옵소서. 하니, 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¹⁰³⁾

㉖ 영의정 이광좌가 아뢰기를, “호속목(虎贖木)에 대한 법을 만든 뜻은 대개 해마다

100)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9년 정월 을해조. “各邑中着實捉虎者乙良 虎贖木減除爲白乎旃 境內顯有虎患 而不能捉得者乙良 監邑刑推 守令亦爲論罪爲白齊”.

101) 『비변사등록』 권7, 영조 즉위년 10월 경자조. “其中諸路虎贖木 則大同節目中亦固有之 而當初立法之意 則蓋欲逐年獵虎 爲民除害 以其皮進上 或用於方物 而其合用者難得 故乃以米布酌定收捧 以爲貿用虎皮之資矣 夫虎者 有則可捉 無則不得捉 不得則當置之而已 今則各邑逐年定爲虎皮幾張之數 使之納其價”.

102)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경인조. “泰億曰 三南大同磨鍊時 果有虎贖木 初則雖出於爲民除害之意 而終不免爲無名之徵 名不正則言不順矣 且以慶尙道寧海言之 雖是濱海之邑 而亦有大嶺 故虎患爲甚 而至於全羅道平原曠野 一望無際處 豈或有虎而猶捧虎贖 此所以有民怨也 [...] 泰億曰 漢時果有類此之事 有曰廉叔度來何暮 昔無襦今五袴云云矣 上曰 是矣 鳳輝曰 當初多有虎患 故有此法 蓋出於爲民除害之意 而近來則或有樹木濯濯 絕無虎患處 而猶徵其贖 大邑則或至三十五疋 三十疋 小邑則爲十疋 以米分徵於民間 一戶所納 不過升斗 而猶是科外之徵 則宜有民怨 [...] 上曰 右相云 名不正則言不順 其言好矣”.

103) 『비변사등록』 권5, 숙종 30년 11월 갑신조. “司諫崔啓翁 正言朴鳳齡啓曰 [...] 而比聞諸道守宰名爲捉虎 而實則或奪民功 以爲己功 或買他物 以爲己功 紛紛欺瞞 希覲賞典 此豈朝家當初激勸之本意哉 [...] 自今以後 諸道守令之捉虎者 更勿許陞資以重官 方以杜要賞之弊習”.

호랑이를 사냥하여 백성의 해를 덜어 주고, 그 가죽은 진상하여 방물에 쓰고자 한 것입니다. [...] 쌀이나 비단으로 수량을 정하여 거두어 들여서 호랑이 가죽을 살 수 있는 자본을 삼았습니다. [...] 만약 견감해 주고자 한다면 호속목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비록 백성을 위해 해를 없애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나, 호랑이를 잡기가 쉽지 않고, 다만 쌀과 베만을 징수하고 있으니, 그 해가 도리어 호랑이보다 더 심하다. 이미 그 해를 알았으면 혁파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¹⁰⁴⁾

사료 ④0은 1704년(숙종 30) 수령이 호랑이를 잡은 공로에 대하여 賞典만을 바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엄금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료 ④1은 1724년(영조 즉위) 영의정 이광좌가 아뢴 것으로 호속목(虎贖木)의 해가 호랑이의 피해보다 더 심하다고 하여 혁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료 ④0~④1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의 포호활동을 담당하는 수령의 문제 및 호속목의 폐단이 발생하여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포호정책은 호랑이 피해를 줄이고 호피 공납을 통한 포호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백성에게 해를 가한 호랑이를 사냥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¹⁰⁵⁾ 그러나 포호활동의 포상 문제와 호피 확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여 포호활동과 호피 공납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호환은 호랑이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를 막고자 시행한 정책들을 수령 등이 악용하여 백성의 고통을 야기 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속목의 경우 해마다 호랑이를 사냥하여 백성의 해를 덜어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면포나 쌀 또는 비단을 통해서 납부하여 시행하였다. 이렇게 잡은 호랑이의 가죽은 진상하여 방물(方物)로 사용하였는데 지역을 막론하고 징수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으며 단순히 호피를 충당하기 위해 면포만 거두어 들여 각종 폐단을 야기 시켰다. 이에 호속목의 해가 호환보다 심하다는 여론과 함께 1724년(영조 즉위)에 혁파되었다. 그리고 호피의 강제 조달이 중단되었다.

104)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 10월 경인조. “領議政李光佐啓曰虎贖木立法之意 蓋欲逐年獵虎 爲民除害 以其皮進上用於方物 [...] 以米帛酌定收捧 以爲質皮之資 [...] 若欲蠲減 莫如虎贖木也 上曰 當初雖出於爲民除害 而捉虎未易 但徵米布 則其害 反甚於虎矣 既知其害罷之可也”.

105) 김동진, 앞의 책, 2009, 169~172쪽.

「16세기 삼남의 호표피 제역과 방납의 위상」에 따르면 16세기 삼남의 공납제 운영의 양상을 호표피 제역이 지방 재정확보를 위해 시행되었다는 점을 말한다.

또한 방납은 공물과 진상의 상납을 담당하는 수령을 통해 방납의 시행과정에서 호표피제역은 고을 내에 공물을 수취하고,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⁰⁶⁾

원래 호표 공납제의 취지는 해마다 호랑이를 사냥하여 백성의 피해도 없애고, 그 가죽을 진상하여 공물로 사용하였으며 포호활동의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하였다. 호표의 생산 감소와 방납의 성행으로 백성의 부담이 가중하면서 사용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¹⁰⁷⁾ 이렇게 호환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호속목을 거두고 있어 백성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호랑이를 잡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쌀이나 베를 거둔다는 것은 백성의 고통이 호환에 의한 피해보다 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호속목은 호환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해 대신 호랑이를 잡고 호표 수요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정책의 한계에 직면하여 결국 혁파된 것이다.

갈수록 호표 공납의 폐단이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호랑이 사냥에서 받는 보상과 공납용으로 사용하는 호표에 대하여 조취를 취하게 된다.

④ 큰 호랑이는 쌀 4석, 중간 크기 호랑이는 3석, 작은 호랑이는 2석으로 현상(懸賞)해서 잡게 하고, 표범(豹虎) 큰 것은 큰 호랑이 상금에 준해서 주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호랑이 상에 준해서 주게 할 것이며 상으로 줄 쌀은 각기 그 고을에 있는 상진미(常賑米)에서 지급한 후 경청(京廳)에 보고하여 회감(會減)하게 하고 잡은 호표(虎皮)는 잡는 대로 즉시 두골(頭骨)을 붙여 곡식을 내는 아문(衙門)에 올려 보내 빙고(憑考)해 처리해서 중간에서 농간하는 폐단을 막아야 옳습니다. 이와 같이 8도 및 3도(都)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영하였다.¹⁰⁸⁾

사료 ④는 영조 30년(1754) 호랑이를 잡은 이들의 대한 포상에 대한 규정 개정과 잡은 虎皮의 머리뼈를 붙여 농간을 막고자 한 내용이다. 호랑이를 대·중·소

106) 김동진, 앞의 책, 2013, 121쪽.

107) 김동진, 위의 책, 2009, 194~196쪽.

108)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7월 갑술조. “以大虎則米四石 中虎則三石 小虎則二石 懸賞捕捉 至於豹虎 大者以大虎之賞相準 稚小者 以小虎之賞相準 而賞米以各其邑所在常賑米上下後 報京廳會減 所捉虎皮則隨即連頭骨上送於出穀衙門 憑考處之 以防中間奸弊爲宜”.

로 분류하여 잡는 경우 각 크기에 맞게 쌀이 지급되었는데 해당 고을에서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호피의 머리뼈를 붙여 표시하고 호피를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만큼 호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포호정책의 폐단은 포호활동으로 잡은 호피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호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호피가 구하기 어렵게 되자 1699년(숙종 25)과 1703년(숙종 29)에 ‘착호절목’을 개정하여 반포하고 포호정책을 통하여 호랑이를 사냥한 자에게 보상을 주었다. 하지만 착호자들이 이에 대해 만족하지 않자 사냥이 중단되거나 백성이 수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결국 포호활동의 폐단이 지속되어 나타난다.

④ 영의정 서문중(徐文重)이 아뢰기를 “지난번 지평(持平) 김상직(金相稷)의 아뢰임으로 인해 합천군수(陝川郡守) 김순(金洵)이 호랑이 잡는 것을 지시한 데 대해 논상(論賞)해야 할지의 여부를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는 일을 하명하셨습니다. 수령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해 잡음으로써 경내(境內)의 호환(虎患)을 없앴으니, 사체가 합당하여 마땅히 상격(賞格)이 있어야 하나 가자(加資)하는데 이르러서는 과연 과중(過重)합니다. 또 후일의 폐단과도 관계되니, 다음에 상을 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 “숙마(熟馬)를 내려 주라.”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여필용(呂必容)이 아뢰기를 “김순에게 이미 가자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 “가자를 환수(還收)하라.” 하였다.¹⁰⁹⁾

④ 비변사의 계사에 “방금 한성부의 첩보(牒報)를 접하니 동부(東部) 전농리(典農里) 상한(常漢)인 표덕룡(表德龍) 집의 황소 한마리가 지난 10월 26일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청량리(靑良里) 상한 박억양(朴億養)의 딸은 임신한 사람인데 11월 24일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도성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호환(虎患)이 이처럼 날자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해 군문(該軍門)으로 하여금 솜씨가 있는 포수를 선발해 보내서 하루속히 잡게 해야 할 일이나 10월 달의 호환을 경조(京兆)에서 조사한 뒤에야 비로소 느릿느릿 보고하였으니 당해부관(當該部官)은 나문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

109) 『비변사등록』 권5, 숙종 28년 6월 임오조. “領議政徐所啓 頃日 又所啓 頃者以持平金相稷所啓 陝川郡守金洵 捉虎指示 論賞當否 令廟堂稟處事命下矣 守令之親自率軍獵捉 以除境內之虎患 事體得當 宜有賞格 而至於加資 果涉過重 且關係弊 以之次施賞之似可矣 上曰 熟馬賜給 左副承旨呂必容曰 金洵 既已加資 何以爲之乎 上曰 加資還收可也”.

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¹¹⁰⁾

④ 호랑이가 성 안에 들어왔다. 훈국(訓局)·어영(御營)에서 호랑이를 잡는 일 때문에 아뢰니, 하교하기를, 성 안에 호환(虎患)이 있어서 찾아 잡게 하면 각영(各營)에서 군인을 1백여 리 안팎에 흩어서 오직 잡아 바칠 것을 생각하므로 마을에 폐단을 끼치고 폐해가 닭과 개에 미치니, 이것은 반드시 그러할 형세이다. 그러면 군인의 폐해가 맹호(猛虎)보다 심할 것 이니, 이 뒤로는 성 안에 호랑이가 들어왔는데 놓친 것은 다만 가까운 곳에서 몰고 먼 곳에 보내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말라. 하였다.¹¹¹⁾

사료 ④는 1702년(숙종 28) 함천군수(陝川郡守) 김순(金洵)이 호랑이를 잡은 데 대한 포상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사료 ④는 1747년(영조 23) 도성 가까운 민가에서 호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늦어 부관을 심문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료 ⑤는 1779년(정조 3) 호랑이가 성안으로 들어오자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호랑이를 잡을 때 백성에 폐단을 끼치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처럼 호환이 발생하자 호랑이를 사냥한 자들에 대한 포상 문제나 백성에 폐단을 끼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 ④~⑤의 사례를 살펴보면 포상 문제와 보고 문제 그리고 포호활동을 하면서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보인다. 사료 ④는 호환을 없애버린 데 대한 보상이 폐단과 관계가 되어 공으로 품계를 올린 것을 다시 거두어 들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 문제를 사전에 조취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 ④는 호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늦어 해당 부관을 심문하는 것으로 이는 포호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민생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한 호환대응책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백성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담당하는 관료를 심문 조치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료 ⑤는 성 안에 호랑이가 들어와 삼군문에서 사냥할 때 발생하는 폐단이 백성에게 미칠

110) 『비변사등록』 권11, 영조 23년 12월 정묘조. “司啓辭 卽接漢城府牒報 則東部典農里常漢表德龍家黃牛一隻 去十月二十六日爲虎嚙死 靑良里常漢朴億養女 懷孕之人 十一月二十四日爲虎嚙死 都城至近之地 虎患如是狼藉 誠極驚駭 令該軍門發遣善放砲手 登時捕捉 而十月虎患 京兆查問之 後始乃緩報 當該部官 拿問處之何如 答曰 允”.

111) 『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11월 계미조. “虎入城內 訓局 御營 以捉虎啓 教曰 城內若有虎患 使之搜捕 各營散布軍人 百餘里內外 惟以捉納爲計 貽弊村閭 害及鷄犬 此必然之勢 然則 軍人之害 甚於猛虎 此後城內虎入 而見逸者 只驅於近地 勿送遠地 以貽小民之弊”.

것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호랑이를 몰아서 잡을 것을 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포호활동을 하는 군사들이 백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폐단을 발생시키자 이러한 명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호활동에 있어서 백성에 대한 폐단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호환 대응책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를 잡는 것과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호피 공납제 등이 주요 목적이 되어 실행하였다. 그러나 호환 대응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관료들의 폐단으로 전국적으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결국 호환 대응책의 한계는 백성들의 생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른 한계로 나타난 현실이었다. 이에 따른 여파는 결국 지방 관료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피지배층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이를 이용한 국가의 회유책에 대한 호환 대응책의 실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게 된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여파가 계속 진행되자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폐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지만 백성들의 지방 관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가 호환 대응책의 한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17·18세기 호환에 의한 피해 양상과 대응책을 분석하여 호환대응책의 영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호환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전국적인 호환피해에 대해서 살펴본 후 17·18세기에 나타나는 호환피해의 실태를 시기별 지역별 분류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국가에서 실행한 호환 대응책을 파악하고자 포호정책을 살펴보고, 신분별 포호활동을 분석하여 포호정책의 의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포호정책의 영향을 살펴 국가에서 실행한 호환 대응책의 한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17·18세기 호환의 증가와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호환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시기별·지역별 호환 피해실태를 알아보았다. 16세기말부터 포호정책의 폐단으로 끊임없이 백성에 대한 수탈이 발생하여 포호정책은 중단하게 되었다. 포호정책이 중단되고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호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호랑이의 수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호환에 의한 피해를 야기했으며 점차 다시 인명피해와 가축피해가 심각했다.

또한 중국에서 호랑이들이 수렵을 피해 국내로 이동하여 호랑이의 수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사냥을 중단하여 조충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포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호환이 지속되었다.

17세기부터 호환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8세기에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기적으로 포호정책이 이루어진 시점과 동일하게 인명피해와 가축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시기적·정책적 영향의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포호정책이 실시되면서 이와 함께 나타나는 각종 문제로 포호활동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호환이 증가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시기별로 시기를 분류하여 호환의 피해실태를 파악한 결과 17세기에 증가하면서 18세기에 호환이 감소되어 나타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7세기는 호랑

이 출현 수가 41마리 이상이고, 인명피해는 369명 이상, 가축피해는 38마리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8세기는 호랑이 출현 수가 155마리 이상이며, 인명피해는 360명 이상, 가축피해는 75마리 이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호랑이의 출현 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17세기에 상대적으로 호랑이의 출현 수에 비해서 인명피해와 가축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18세기에는 호랑이의 출현 수에 비해서 오히려 인명피해와 가축피해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호환에 의한 피해를 전국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성 76건 이상, 경기도 169건 이상, 강원도 224건 이상, 경상도 10건 이상, 전라도 30건 이상, 충청도 18건 이상, 평안도 67건 이상, 함경도 12건 이상, 황해도 4건 이상, 그리고 전국 797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도성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호환이 집중된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호환이 자주 발생한 지역의 경우 민가의 거주지거나 인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도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환이 자주 발생하여 그 피해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심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도성과 가까운 지역에서도 호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면 호랑이의 서식지가 민가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축피해의 경우 목장에서 방목하여 기르는 전마의 피해가 주목된다. 전마(戰馬)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마는 목장에서 방목해서 길렀으나 잦은 호환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목장에서 기르는 전마의 수가 호환으로 인하여 감소하자 중앙정부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이렇게 호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가에서는 호환에 의한 피해 보상책을 실시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호환이 발생하여 생기는 각종 폐단문제로 지배층에 대한 백성의 고통은 더욱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민심을 수습하고자 호환에 의한 피해의 보상책으로 호 사상을 입각한 정려·정문이 세워지기도 하였으며 군역면제나 구황정책을 통하여 호환을 예방하고 동요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에 민란이 나타나자 조정에서는 호랑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요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포호활동에 적극 나섰다. 호랑이에게 물려죽은 사람에게 흉전을 베풀거

나, 호랑이와 싸워 부모·가족 등의 생명을 구하면 정려문을 세워줬다. 즉, 사회문 제화 되고 있는 호환을 해결하고자 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호랑이 사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포상문제로 사냥이 중단되어 호환이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 되었다. 이는 국가에서 호환을 줄이고자 포상을 걸어서 사냥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포상 지급 문제 및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포상이 어려워져 사냥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국가에서는 호환을 줄이고자 실행하였던 포호정책의 포상이 문제화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 국가에서 실행한 포호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포호활동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앙의 포호활동과 기타 포호활동을 살펴보고 호랑이 사냥을 위하여 반포된 ‘착호절목’을 살펴보았다.

조선전기의 포호활동이 활과 화살 그리고 그물을 통하여 잡는 방식이라면 조선후기에는 포수를 동원한 사냥방식으로 포호활동을 실시하였다. 17·18세기의 포호활동의 큰 변화는 조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방식 위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조총의 보급은 포수의 양성과 포호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포수양성은 포호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후 삼군문 체제의 확립과 함께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서 도성지역과 경기 지역을 3구역으로 나누어 포호활동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방의 포호활동은 최고 책임은 병사가 담당하여 영장(營將)은 이 병사의 지휘를 받아 자신이 관할하는 수령에게 포호활동을 지시하면서 참여하였다. 호환이 극심할수록 지방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에 있어 영장의 포호활동이 더욱 중요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장제(營將制)는 포호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의 치안을 안정화 시키는 데 활용되었던 것이다.

첫째, 포호정책을 파악한 결과 ‘착호절목’을 반포하여 포호활동을 행하였다는 것을 확인 되었다. 이러한 ‘착호절목’은 포호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포호활동에 임하는 이들에 대해 큰 영향을 주었고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본래 포호정책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 사냥을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목에 미진한 부분을 개정하였는데 호랑이를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최소화시키고 잡는 수에 따른 포상부분을 개정하고 다시 반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포호활동에 임하게 실시되었다.

둘째, 포호활동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삼군문과 일반 백성들이 사냥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삼군문에 속한 장관과 포수들로 구성되어 활동에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군문에 소속된 군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 내에서 호환이 발생하면 포호활동을 실시하여 호랑이를 사냥을 하였는데 호환이 발생한 지역에서 호랑이 물이꾼을 강제로 모집하였고 삼군문에 소속된 군사들을 보내어 신속하게 포호활동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서의 선방포수도 포호활동에 동원되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냥을 하는 사례가 확인 되었는데 전문적인 사냥꾼이 아닌 일반 백성에서도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면 조총이 백성에도 공급되어 호랑이 사냥에 적응 임할 수 있게 하였다고 여겨진다. 즉 포호활동에 포수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포수양성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IV장에서는 호환대응책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래 호환대응책의 취지는 백성을 위해 해를 끼치는 동물인 호랑이를 없애는 의미이다. 포호정책은 호환으로부터 민생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포호정책은 실행하면서 점차 백성에 대한 수탈로 변화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다. 특히 포호활동을 통한 각종 폐단은 호환으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문제가 증가되어 지방수령에 대한 피지배층의 불신이 증가하였다. 또한 호속목의 폐지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래 포호정책은 호랑이를 사냥하여 백성의 피해도 없애고 이를 통해 얻는 호피를 통해 포호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호피 요구로 인한 방납의 성행으로 백성의 부담이 과중하면서 사용을 제한하는 조취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민생안정에 문제시 되고 지배층의 착취와 더불어 백성의 고통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의 호환에 의한 피해의 양상과 대응책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후기의 비교·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7·18세기의 호환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호환이 중앙정부의 민생안정의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나듯이 조선후기의 호환은 조선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호환을 통하여 조정의 정치적 상황이나 대응책들이 지방수령과 백성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지방수령과 백성의 사회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그런 점에서 향후 호환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실태분석과 정책 분석을 떠나서 민생안정을 책임져야했던 지배층의 노력이 오히려 지방수령의 폐 단으로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 된다. 이렇듯 호환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적 대응 책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파악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보완하여 연구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通編)』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만기요람(萬機要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여지도서(輿地圖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연행록(燕行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치재일록(癡齋日錄)』
『택리지(擇里志)』

2. 연구논저

1) 단행본

강동원, 『한국 중세 사회계층에 따른 무예활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5, 국사편찬위원회, 2003.

권인혁,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

-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008.
- 김동진, 『조선전기 포호정책 연구 : 농지개간의 관점에서』, 선인, 2009.
- _____, 『조선전기 호포정책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 해안, 2003.
- 김호근 · 윤열수, 『한국호랑이』, 열화당, 1986.
-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2000.
- 박충석 · 와타나베 히로시, 『국가이념과 대외인식-17~19세기』, 아연출판부, 2002.
-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해안, 1999.
- 이두현 · 장주근·이광규,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2004.
- 이창식, 『12띠의 민속과 상징 ③ 호랑이띠』, 국학자료원, 1998.
- 정형지, 『조선후기 진휼정책 연구:18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최인학, 「설화 속의 호랑이」,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2) 연구논문 및 기타

- 강덕우, 「16세기 구제 시책에 대한 일고」, 『인하사학』, 5, 인하대학교 사학과, 1997.
- 강진옥,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 『민속연구』 1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 구완희, 「조선후기 균역이정의 방향과 수령」, 조선사연구 제1집, 조선사연구회, 1992.
- 권인혁 ·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기호, 「한국 호랑이 설화의 주제별 유형 - 발달론적관점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제5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 _____, 「웃음 서사의 한 원형으로서 호랑이 설화」, 『한국사상과문화』 3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_____, 「호랑이 보은 설화에 나타난 대극과 통합의 원리」, 『동아인문학』 13, 동아인문학회, 2008.
- 김동진, 「조선전기 수령제도 연구」, 『사학지』 21, 단국대학교사학회, 1988.

- 김동진, 「조선전기 농본주의와 포호정책」, 『호남사학』 제41집, 호서사학회, 2005.
- _____, 「조선전기 강무의 시행과 포호정책」, 『조선시대사학보』 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 _____, 「16세기 삼남의 호표피 제역과 방납의 위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6 No.2, 2013.
- _____, 「병자호란 전후(1636-1638) 소의 역병 발생과 확산의 국제성」, 『의사학』 제22권 제1호, 2013.
- 김동진·이항, 「조선시기 한국인과 한국법의 관계 변화」, 『역사와 담론』 제50집, 호서사학회, 2011.
- _____, 「19세기 한국 법을 바라보는 세 시각 : 한국 법, 조선인, 서구인의 눈으로 그린 모습」, 『역사와 문화』 23호, 문화사학회, 2012.
- 김명희, 「설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와 여성」, 『강남어문』 9 강남대학 국문학과, 1996.
- 김수연, 「호랑이담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 『한국어문학연구』 5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 김순남, 「15세기중반~16세기조선북방 군역의 폐단과 군역 감소」, 『조선시대사학보』 61권, 조선시대사학회, 2012.
- 김영주, 「조선전기 군역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영진, 「한국 자연신앙의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용권, 「한국 회화사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상반된 상징성 연구」, 『동양예술』 제8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4.
-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의 동요와 군역전」, 『동방학지』 3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 김충식, 「조선전기의 구황정책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현주,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진휼비와 진휼실상」,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도식, 「조선초기 강무제에 대한 일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박미경, 「조선후기 민화에 나타난 호랑이 그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영준, 「조선전기 수렵문화(狩獵文化)에 관한 연구 : 이조실록(李朝實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주, 「조선시대 효자에 대한 정표정책」, 『한국사상사학』 10권, 한국사상사학, 1998.

- ____, 「조선중기 경상도 선산지역의 효자, 열녀 『일선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집, 조선시대사학회, 1999.
- ____, 「조선중기 경상도 함양지역의 효자, 열녀 『천영지』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8집, 진단학회, 1999.
- ____, 「조선시대 경남지역의 효자, 효녀, 효부: 경상도읍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54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0.
- ____, 「조선시대 경북지역의 효자, 효녀, 효부 사례분석 경상도읍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54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10.
- ____, 「조선시대 경산지역의 효자, 열녀,」, 『조선사연구』 20권, 조선사연구회, 2011.
- 서정상, 「조선초기 균역편제의 추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제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 엄소연, 「조선시대 호랑이 민화의 동물 상징 및 그 사회적 맥락,」, 『조형예술학연구』 제6호, 한국조형예술학회, 2004.
- 윤광봉, 「호랑이 說話(설화)와 演戲(연희),」, 『비교민속학』 14, 비교민속학회, 1997.
- 윤내현, 「한국 민족신화의 재검점; 국조신화 : 단군 신화의 역사성과 환웅 꿈 호랑이의 정체,」, 『인문과학』 28,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이광희, 「조선전기 호환과 국가시책,」,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동철, 「호랑이가 등장하는 호행설화의 교육적 효과,」, 『한민족문화연구』 21, 한민족문화학회, 2007.
- 이송희, 「17~18세기 사찰내 산신각 건립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영자, 「산신도에 나타난 호랑이 · 배경 · 지물의 상징성,」, 『민속학연구』 12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
- 이정재, 「동북아 설화의 곰과 호랑이 연구,」, 『한국민속학보』 7 한국민속학회, 1996.
- 이지영, 「여 · 남 산신과 호랑이 신격의 상관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 이창식, 「호랑이띠의 민속과 상징,」, 『중앙민속학』 6집,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4.
- 이한길, 「〈해님 달님〉 연구—트릭스터로서의 호랑이,」,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 이호주, 「한·중 호랑이 설화 비교연구-보은설화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6.
- 정연식, 「조선시대의 호랑이와 호환」, 『인문논총』 12,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4.
- 정자영, 「조선 후기 군역제의 변화, 조선 후기 군역제의 변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재훈, 「조선시대 국왕의례에 대한 연구 -(강무(講武)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0권, 한국사상문학학회, 2009.
- 정형지, 「숙종대 진휼정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제25권, 한국역사연구회, 1997.
- _____, 「조선시대 기근과 정부의 대책」, 『이화사학연구』 제30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3.
- 조계영, 「조선시대 호환과 국가의 대책 -착호절목-의 분석」, 『사학연구』 제91호, 한국사학회, 2008.
- 최래욱, 「한국효행 설화의 성격 연구-효자 호랑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0집, 한국민속학회, 1977.
- 최형국,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착호군」, 『인물과사상』통권1117호, 인물과사상사, 2008.
- 최영희, 「임진왜란 중의 사회동태」, 한국연구원, 『한국연구총서』 28, 1975.
- 하수경, 「한국 호랑이 그림에 대한 일고찰」, 『비교민속학』 26집, 비교민속학회, 2004.

<부록> 17·18세기 호랑이 출현·포획 및 피해의 현황

왕대	월/일	출현지역	착호자	출현 수	포획 수	인명 피해	가축 피해
선조 33년 (1600)	11월 26일 (丙寅)	豐壤 땅	이종의	1	1		
선조 34년 (1601)	3월 28일 (丙寅)	畿甸		1		多(+2)	
선조 36년 (1603)	2월 13일 (庚子)	창덕궁의 소나무 숲	左右捕盜將	1		1	
선조 36년 (1603)	3월 18일 (甲戌)	창덕궁, 송춘苑	手砲人	1			犬(+2)
선조 38년 (1605)	5월 15일 (戊子)	살곳이 목장		1			馬(+2)
선조 40년 (1607)	7월 18일 (戊申)	창덕궁	군사	多(+2)			
소계				7(+)	1	3(+)	4(+)
광해군 8년 (1616)	6월 2일 (辛丑)		이선	1	1		
광해군 8년 (1616)	11월 16일 (癸未)	변산계곡		多(+2)		多(+2)	
광해군 10년 (1618)	4월 8일 (丁酉)	양주		1		1	1
광해군 14년 (1622)	1월 16일 (壬子)		윤계륜		7		
광해군 14년 (1622)	11월 13일 (乙巳)	창덕궁 후원	훈련도감			1	
소계				4(+)	8	4(+)	1
인조 3년 (1625)	1월 22일 (辛未)	結城	歸化人	1	1		
인조 4년 (1626)	12월 17일 (乙卯)	인왕산 曲城 밖, 仁慶宮	苑圃司提調 都監大將, 摠戎大將	1	1	1	
인조 8년 (1630)	5월 28일 (丁未)	평안도		1		多(+2)	
인조 9년 (1631)	9월 8일 (己卯)	義州		1		30	
인조 10년 (1632)	6월 10일 (丙子)	西所	훈련도감과 원유사(苑圃司)	1		1	
인조 11년 (1633)	6월 6일 (丙寅)		牧子		1		
인조 16년 (1638)	2월 5일 (己亥)	의주		多(+2)		1	1
소계				7(+)	3	35(+)	1
효종 3년 (1652)	9월 6일 (乙亥)	전라도 長水縣	우한의 처	1		1	
효종 8년 (1657)	3월 12일 (乙卯)	강원도 춘천, 횡성, 홍천, 원주		1		1	1
소계				2		2	1

현종 10년 (1669)	9월 21일 (辛亥)	開城府		1		1	
현종 10년 (1669)	11월 14일 (癸卯)	경상도 하양, 칠원		1		1	
현종 12년 (1671)	2월 29일 (辛亥)	三南		1		多(+2)	
현종 12년 (1671)	6월 30일 (己酉)	各道		1		多(+2)	
현종 12년 (1671)	8월 30일 (戊申)	京中		1		多(+2)	
현종 12년 (1671)	9월 30일 (戊寅)	各道		1		多(+2)	
현종 12년 (1671)	12월 30일 (丁未)	各道		1		多(+2)	
현종 13년 (1672)	1월 1일 (戊申)	鍾城	강계한의 아들	1		1	
현종 13년 (1672)	7월 24일 (丁卯)	호남 順天府의 목장		1			25(馬)
소계				9		13(+)	25
숙종 4년 (1678)	7월 24일 (壬戌)	경상도 하양, 칠원		1		1	
숙종 9년 (1683)	閏6월 21일 (辛酉)	近畿		1			
숙종 11년 (1685)	12월 19일 (乙丑)	勅使가 머무는 곳		1			1(馬)
숙종 12년 (1686)	3월 4일 (戊午)	함경도	정광홍	1	1	1	
숙종 18년 (1692)	10월 29일 (甲辰)	人家		1		多(+2)	
숙종 18년 (1692)	10월 29일 (甲辰)	安邊	김귀원의 처	1		1	
숙종 23년 (1697)	4월 30일 (己卯)	八道		1		1	
숙종 23년 (1697)	6월 29일 (丁丑)	양주	御營總將校	1		多(+2)	
숙종 24년 (1698)	7월 8일 (庚辰)	都城東門 밖 祭基 리의 村家, 八道		多(+2)		多(+2)	
숙종 25년 (1699)	閏7월 17일 (癸丑)	順陵齋室, 八路		多(+2)		多(+2)	
숙종 27년 (1701)	12월 23일 (乙亥)	강원도 狼川縣		1		13	
숙종 28년 (1702)	10월 20일 (丁酉)	서쪽 교외		1		多(+2)	
숙종 28년 (1702)	11월 21일 壬午	양주, 포천					
숙종 28년 (1702)	12월 13일 (己丑)	弘濟院	삼군문	1		1	

숙종 28년 (1702)	12월 18일 (甲午)	鞍峴		1	1		
숙종 29년 (1703)	3월 22일 (丁卯)	경상도 합천	문순천	1	1	1	
숙종 29년 (1703)	10월 10일 (壬午)		김순		5		
숙종 29년 (1703)	10월 14일 (丙戌)	평안도		1		多(+2)	
숙종 29년 (1703)	10월 15일 (癸未)			1	8		
숙종 29년 (1703)	11월 26일 (丁卯)	近郊	삼군문	1		多(+2)	
숙종 30년 (1704)	8월 3일 (庚午)	춘천		1		22	
숙종 36년 (1710)	10월 20일 (辛巳)	강원도 영월군, 전라도 진산군	지막립의 작은 딸, 이국량의 처	1		2	
숙종 37년 (1711)	11월 27일 (壬子)	西部阿峴	삼군문	1			大(1)
숙종 38년 (1712)	11월 19일 (戊戌)	恭陵과 順陵	삼군문	1		1	1
숙종 43년 (1717)	8월 9일 (庚寅)	諱道		1		500	
소계				25(+)	16	648(+)	3
경종 1년 (1721)	8월 15일 (癸酉)	강원도	박창덕의 처	1		1	
경종 2년 (1722)	11월 1일 (壬午)	평안도 산천		1		多(+2)	
소계				2		3(+)	
영조 즉위년 (1724)	10월 30일 (庚子)	齋室	삼군문	1			1
영조 즉위년 (1724)	11월 1일 (辛丑)	光陵	삼군문	1			
영조 1년 (1725)	4월 11일 (戊寅)	齋室	삼군문	3		1	1
영조 1년 (1725)	4월 12일 (己卯)	光陵	삼군문				
영조 1년 (1725)	4월 26일 (癸巳)	光陵	敎鍊官, 牙兵				
영조 1년 (1725)	5월 17일 (甲寅)	慶山		1		3	
영조 1년 (1725)	7월 25일 (庚申)	堤川縣		1		3	
영조 2년 (1726)	10월 20일 (戊寅)	영남, 대구 등		1		15	
영조 8년 (1732)	閏5월 3일 (戊子)	전라도 南原府	우창의 아들	1	1	1	

영조 8년 (1732)	2월 8일 (壬子)						
영조 9년 (1733)	11월 7일 (癸丑)	양주, 포천	포수	1		多(+2)	
영조 9년 (1733)	12월 12일 (己未)	加平, 抱川, 延安, 白川		1			多(+2)
영조 10년 (1734)	1월 29일 (丙午)	諺道		1		多(+2)	
영조 10년 (1734)	9월 30일 (壬寅)	八道		多(+2)		140	
영조 10년 (1734)	11월 13일 (甲申)	交河, 坡州		1		1	1
영조 11년 (1735)	1월 18일 (己丑)	경상도, 경주	마을 사람들, 박남구	2		2	
영조 11년 (1735)	5월 29일 (戊辰)	八道		多(+2)		40	
영조 11년 (1735)	11월 27일 (壬戌)	북부 삼천동 굴 속		1			多(+2)
영조 12년 (1736)	3월 7일 (辛丑)	백련봉					
영조 12년 (1736)	9월 27일 (戊午)	典姓署		1			2(亥)
영조 15년 (1739)	6월 1일 (丙子)	箭申牧場	삼군문				
영조 16년 (1740)	6월 9일 (庚申)	한강에서豆毛浦外 南山서쪽貞院峴근처	삼군문	1			多 (+2 犬亥)
영조 19년 (1743)	1월 28일 (癸未)	평안도 江界		1		20	
영조 19년 (1743)	11월 27일 (丙午)	경성		1			
영조 20년 (1744)	1월 9일 (丁亥)	사직의 서쪽 담장	삼군문	1			
영조 22년 (1746)	4월 17일 (壬午)	道內		1		多(+2)	
영조 23년 (1747)	1월 9일 (丁卯)	동부관내 동대문	삼군문	2			9(亥)
영조 23년 (1747)	12월 1일 (丁卯)	典農里, 靑良里	삼군문	2		1	1(牛)
영조 23년 (1747)	12월 2일 (戊午)	都城	삼군문	1		1	
영조 24년 (1748)	7월 25일 (丁未)	강원도, 충청도		1		多(+2)	
영조 24년 (1748)	閏7월 8일 (庚申)	평안도		1		多(+2)	
영조 24년 (1748)	10월 10일 (辛卯)	경기		1		多(+2)	
영조 24년 (1748)	12월 25일	충청도		1		多(+2)	

(1748)	(乙巳)						
영조 25년 (1749)	8월 1일 (己巳)	공주		1		多(+2)	
영조 25년 (1749)	9월 11일 己巳	기전		1			多(+2)
영조 26년 (1750)	1월 7일 (辛亥)	도성		1			
영조 26년 (1750)	1월 7일 (庚午)	司宰監契	삼군문	1			1(犬)
영조 27년 (1751)	5월 1일 (辛未)	慕華館풀밭	삼군문	1			多(+2 馬)
영조 27년 (1751)	6월 9일 (甲辰)	경복궁		1			
영조 27년 (1751)	11월 8일 (辛未)	穢牲畜場		1			1(亥)
영조 27년 (1751)	11월 12일 (甲戌)	서울		1			
영조 27년 (1751)	11월 12일 (辛未)	인왕산 아래		1			
영조 28년 (1752)	1월 2일 (甲子)	경복궁 후원		1			
영조 28년 (1752)	1월 2일 (壬申)	박진성의 집	삼군문	1			1(犬)
영조 28년 (1752)	1월 11일 (壬申)	본성의 담 밑, 負兒 峴	삼군문	5			
영조 28년 (1752)	1월 12일 (甲戌)	도성 안팎		1			多(+2)
영조 28년 (1752)	1월 12일 (壬申)	외남산	삼군문	1			多(+2)
영조 28년 (1752)	1월 15일 (壬申)	남북성안		1			1(犬)
영조 28년 (1752)	2월 11일 (癸卯)	함경도		1		多(+2)	
영조 28년 (1752)	2월 16일 (壬申)	본동	삼군문	1			1(亥)
영조 28년 (1752)	2월 25일 (丁巳)	함경도		1		多(+2)	
영조 28년 (1752)	3월 25일 (丙戌)	충정도		1		多(+2)	
영조 28년 (1752)	7월 11일 (己巳)	황해도		1		多(+2)	
영조 28년 (1752)	7월 17일 (乙亥)	황해도		1		多(+2)	
영조 28년 (1752)	7월 18일 (丙子)	전라도		1		多(+2)	
영조 28년 (1752)	7월 27일 (乙酉)	충천도		1		多(+2)	

영조 28년 (1752)	10월 7일 (甲午)	함경도		1		多(+2)	
영조 28년 (1752)	11월 24일 (辛巳)	충청도		1		多(+2)	
영조 28년 (1752)	12월 10일 (丙申)	함경도		1		多(+2)	
영조 28년 (1752)	12월 28일 (甲寅)	경기도		1		多(+2)	
영조 29년 (1753)	4월 10일 (癸酉)	도저동	삼군문	1			多(+2)
영조 29년 (1753)	8월 26일 (癸酉)	箭串馬場	삼군문	1			3(馬)
영조 29년 (1753)	10월 26일 (癸酉)	租田契에 사는 保人 金貴才와 砲手 林玉 京 등의 집 뒤 밭	삼군문	1			多(+2)
영조 29년 (1753)	11월 15일 (癸酉)	경복궁 안 接松亭	삼군문	1			1(犬)
영조 30년 (1754)	閏4월 19 일(戊辰)	경기		多(+2)		124	
영조 30년 (1754)	5월 10일 (戊子)	경덕궁		1			
영조 30년 (1754)	7월 27일 (甲戌)	各處		多(+2)		多(+2)	
영조 30년 (1754)	9월 9일 (乙酉)	강원도 회양		1		100	
영조 30년 (1754)	11월 1일 (丙子)	강원도 강릉 등		1		81	
영조 30년 (1754)	11월 8일 (甲戌)	경기고을	강변포수	1			多(+2)
영조 30년 (1754)	12월 25일 (己巳)	國社		1			
영조 30년 (1754)	12월 26일 (甲戌)	본성 담장안	삼군문	1			多(+2)
영조 31년 (1755)	1월 22일 (乙亥)	호서		1			多(+2)
영조 31년 (1755)	1월 25일 (乙亥)	鎭城里 강 주변 경 성	삼군문	1			1(亥)
영조 31년 (1755)	1월 27일 (乙亥)	외남산	삼군문				
영조 31년 (1755)	2월 25일 (乙亥)	경기	善放砲手		22		
영조 31년 (1755)	9월 1일 (壬申)	공주	박진귀	1	多(+2)	1	
영조 32년 (1756)	1월 19일 (丙子)	犧牲場		1			1(亥)
영조 32년 (1756)	1월 20일 (戊子)	犧牲場		1			

영조 32년 (1756)	2월 2일 (丙子)	陵寢		1		3	1(馬)
영조 32년 (1756)	7월 12일 (丁丑)	箭橋馬場		1			
영조 32년 (1756)	8월 16일 (壬子)	八道		多(+2)		多(+2)	
영조 32년 (1756)	9월 2일 (丙子)	瓦署契	삼군문	1		1	
영조 32년 (1756)	9월 8일 (丙子)	瓦署契	삼군문	1			多(+2)
영조 33년 (1757)	4월 23일 (甲申)	北門안	삼군문	1		1	
영조 33년 (1757)	5월 18일 (戊申)	東五陵의 局內	삼군문	2			
영조 33년 (1757)	10월 16일 (乙亥)	恭陵 順陵	삼군문	3	3		多(+2)
영조 33년 (1757)	10월 19일 (戊寅)						
영조 33년 (1757)	11월 12일 (丁丑)	경기고을		1		多(+2)	
영조 35년 (1759)	9월 25일 (己卯)	경상도		1			
영조 39년 (1763)	1월 8일 (癸未)	謚道		1		多(+2)	
영조 41년 (1765)	10월 18일 (庚申)	吉祥牧場		1			多(+2 馬)
영조 41년 (1765)	10월 20일 (乙酉)	吉祥牧場		1			多(+2 馬)
영조 43년 (1767)	1월 23일 (丁亥)	沙阿里契孫家亭	삼군문	1		1	
영조 45년 (1769)	3월 15일 (戊戌)	도성 안		2			
영조 45년 (1769)	3월 24일 (丁未)	畿甸	삼군문	多(+2)			多(+2)
영조 45년 (1769)	8월 5일 (甲寅)	경상도, 함경도		多(+2)		多(+2)	
영조 45년 (1769)	9월 6일 (乙酉)	평안도		1		多(+2)	
영조 45년 (1769)	10월 25일 (癸酉)	평안도		1		多(+2)	
소계				111(+)	28(+)	592(+)	61(+)
정조 1년 (1777)	9월 19일 (辛巳)	궁궐 담장 밖 軍堡		1		1	
정조 2년 (1778)	5월 10일 (己巳)	성 밖	삼군문	1	1		1
정조 2년 (1778)	10월 4일 (庚申)	성 밖	삼군문	1	1		1

정조 3년 (1779)	1월 11일 (己亥)	각道		多(+2)		多(+2)	
정조 3년 (1779)	3월 16일 (己亥)	諸道		多(+2)		多(+2)	
정조 3년 (1779)	5월 3일 (丙戌)						
정조 3년 (1779)	11월 3일 (癸未)	성 안	各營軍人	2			
정조 5년 (1781)	閏5월 4일 (丙午)	서쪽 성 밖		1		1	
정조 7년 (1783)	1월 28일 (庚申)	인왕산 밖과 한북문 밖	훈련대장 구선 복 등	2	2		
정조 7년 (1783)	2월 6일 (丁卯)	동교, 서교		多(+2)			多(+2)
정조 7년 (1783)	2월 7일 (戊辰)	서도 능침 근처		1			
정조 7년 (1783)	2월 11일 (壬申)	靑石洞		多(+2)			多(+2)
정조 7년 (1783)	3월 24일 (乙卯)	각 능		多(+2)			多(+2)
정조 7년 (1783)	5월 22일 (壬子)	外南山	砲手朴成昌	1	1		
정조 8년 (1784)	11월 3일 (甲寅)	峨嵯山	訓練都監	1	1		
정조 9년 (1785)	9월 20일 (丙寅)	沁都		1		多(+2)	多(+2)
정조 13년 (1789)	1월 10일 (丁卯)	道內各邑		1		2	
정조 14년 (1790)	3월 30일 (庚戌)	鸞巖洞	총융청		5		
정조 17년 (1793)	11월 18일 (丁未)	水浴山	최익손 등	1	1		
정조 18년 (1794)	1월 6일 (甲午)	양근(楊根)	우사(右司) 등	1	1		
정조 18년 (1794)	2월 13일 (辛未)	峨嵯山	본청의 아병 (牙兵) 황우정 등	2	2		
정조 20년 (1796)	11월 13일 (甲寅)	鷹峰		多(+2)			多(+2)
소계				29(+)	15	8(+)	12(+)

(자료: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참조.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많은 경우 多(+2)로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백으로 처리하였다.)